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 목
제작 : 문화공보실장 김재호

제 384호 그 1.

1973. 7. 5.

전 화 75-7614

인 대 : 서울특별시 종합발달실

전 화 75-6090

시 보

차 데

◎ 규 칙 .

제 1310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3
제 1311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56
제 1312 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	62
제 1313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체제증개정규칙	67
제 1314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체제증개정규칙	71
제 1315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체제증개정규칙	73
제 1316 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체제증개정규칙	7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 분장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태식

1973년 7월 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10호

서울특별시 사무 분장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문·신·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문화공보실) ① 문화공보실에
· 공보제 · 보도제와 문화제를 두고 제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공보실의 계열 분장사무는 대
용 자호와 같다.

1. 공보제

가. 문화공보 명령의 종합체계
나. 문연장 설치처가 및 지도
다. 각본심사와 문연행위의 지도
라. 광고영화의 경영 및 영화기사
의 면책

마. 시민위원회 및 사업장 안내
바. 서울특별시보 발간

사. 시민회관 · 시립교향악단 · 국악관
현악단 · 어린이합창단의 운영
아. 친애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보도제

가. 시정보도 및 사진 영화 제작
나. 책의 선판과 라디오 · 텔레비
방송등 자료의 취재 분석
다. 유선 방송의 문·영화의 제도
라. 성내 사전집 운영
마. 표본 여론 조사
바. 순회 영화 활동

3. 문과제

가. 행로문화의 보급 · 연구 및 보존
나. 서울특별시 문화서적화 운영
다. 행로문화재의 디자인 저작 및 해제
라. 문화제의 보존 및 유지관리
마. 학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바. 방송단체의 제도화 제작
사.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아. 무정기 간정물 출판의 제도
자.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와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단체의 제
도육성
자. 기타 문화예술의 전통에 관한
사항

제 3조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을 보

74-5 제384호 그 1 시

보 1973. 7. 5.

과하게 사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예금담당관·법무담당관·환경담당관과 시정개발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1 조 (기획담당관) ①기획담당관 및

기획조정계·심사분석계와 기획관

직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조정계

가. 시정과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각종 중요 계획수립에 관한 조정·통제

다. 예산 편성방침과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라. 관내 다른 낙단관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심사분석계

가. 시정시책과 기획시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나. 시정평가 교수단 운영

3. 기획 관리계

가. 수도행정 자문위원회의 운영

나. 상황관 제작 및 유지 관리

다. 시정현황자료 발간

라. 행정실적의 종합기록 및 유지 관리

마.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제 5 조 (예산담당관) ①예산담당관 및

예산총괄계·예산 1 계과·예산 2 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예산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총괄계

가.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조정

나. 세입에 관련된 세출예산 배정의 합의

다. 외자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라. 외자 도입 및 차관에 관한 사항

마. 낙단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1 계

가. 재정제도의 연구·발전

나.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 및 예정

제384호 그 1

시

1973. 7. 5. 74-4

(전설사업비 · 도시계획비 분 제외 한다)	행정자치부 지정
3. 예산 2지	라.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가. 기업회계 세도의 연구	마. 법률 고문 용역에 관한 사항
나. 기체이 관한 사항 (기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행정사건 처리관과의 조사연구
다. 일반회계총 전설사업비 및 도 시계획비 예산의 현성 및 배경	제 7조 (통제담당관) ①통제담당관은 법 에 통계기준법과 통계조사법을 두고 제장은 자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통제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각호와 같다.
라. 기업회계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 예산의 현성 및 배경	1. 통계기준법
제 6조 (법무담당관) ①법무담당관은 법 에 법제과와 송무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법무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각호와 같다.	가. 통계행정에 관한 통합계획의 수립
1. 법 제 계	나. 통계기준법 설정
가.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 에 관한 사항	다.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나. 고시·공고·예규문서의 실사	라. 업무·통제의 자료수집 및 작성
다. 법규 및 예규문서의 현찰	마. 각종 통계보고의 조정 및 통 제
라. 담당부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바. 통계관행물의 발간 및 유통
2. 총 무 계	사. 담당부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통제	2. 통제조사
나. 행정사건 처리의 실사	가. 각종 조사통제의 계획 및 조 정
다. 소송예리안 신임 및 소송 수	나. 각종 조사통제의 집행과 현장
	다. 통제의 공고

74-6 제384호 고 1 시

보 1973. 7. 5

라. 조사원의 교육 훈련

마. 조사통계의 조사 및 보고

바. 위임통계의 조사

제 8 조 (시정개발담당관) ①시정개발담당관은 밀에 개발 1제, 개발 2제와 개발 3제를 두고, 제작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면, 개발 3제장은 지방도록기자로 보할 수 있다.

②시정개발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개발 1제

가. 행정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기획, 재정, 조직, 인사, 업무처리방법, 민원 기관)

나. 도시개발자료실 운영 및 자료교환

다. 담당관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개발 2제

도시미화: 풍원녹지, 산업시책, 도시공해, 보건위생, 청소, 사회복지, 도시교통, 관광운수에 관한 연구

3. 개발 3제

도시계획, 주택, 전후, 상수도, 하

수도 기타: 거설분야에 관한연구

제 9 조 (비상계획관) 비상계획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낭호담당관·안전담당관과 동원담당관을 두고, 낭호담당관은 3급감유 상당 범정적 국가공무원으로, 안전담당관과 낭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10 조 (낭호담당관) ①낭호담당관 밀에 계획체, 운영체와 상황체를 두고 계획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체장과 상황체장은 3급을 둘 상당 범정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낭호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계획체

가. 관소관 업무와 종합조정

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제작의 수립과 조정 통제(동원분야는 제외한다.)

다. 충무계획 사업의 실사 분석

라.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체

가. 보호구역의 관리

1973.7.5 74-7

제 384호고 1 시	보
나. 중요시설의 경비지도	다. 제재 및 사고통제와 보안분석
나. 특경운제 연구 및 시설에 대한 한 사람	라. 제재 및 사고발생 사후대책의 조정 통제
3. 상황제	제 12조(동원담당관) ①동원담당관은 에 동원 1계와 동원 2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동원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가. 지하저장소의 운영	1. 동원 1 계 가. 국가 등의 건설에 관한 세회수 립과 조정 통제
나. 비상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동원 소요 및 능력 판단과 지원 관리
다. 윤지연습 실시 및 일방공훈련 의 통제	다. 비축계획의 조정
라. 충무계획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제원의 최적, 유지	라. 전시방역의 정비
제 11조(안전담당관) ①안전담당관은 에 관리계와 반제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안전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마. 방위법의회의 운영
1. 관리계	바.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계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안전 및 방재에 관한 종합적 회수립 및 조정통제	2. 동원 2 계 가. 인력 (경비, 근로) 동원분야 회수립과 조정 통제
나. 안전기준의 설정	나. 향토예비군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계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직장 예비군의 관리
2. 방재계	다. 군 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마. 병사관계 지원 사항
나. 방지훈련 실시	

11 조 (감사관) 감사관은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춘활 담당 관을 두고, 담당관은 시기관으로 보 나다.	대한 감사·비위조사 및 경제 제청,
14 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 임에 감사 1개·감사 2개·감사 3개와 감사 4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제별, 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구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 항에 대한 감사·비위조사 및 정책제청·다만, 구청에 대한 중 합감사는 행정과와 공동으로 실 시할 수 있다
1. 감사 1개 가. 감사이·소한 충남기획 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수관준비 및 결과의 처리 다. 관광은수국·수도국 소관 사항 에 대한 감사·비위조사 및 경제 제청 라. 시비그조단체·시기부자기관 및 시금교대에 대한 감사 나.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제회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감사 3개 가. 도시계획국·보건사회국·환경국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경제제청 나. 한강건설사업소와 노동위원회 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경제제청
2. 감사 2개 가. 기획·관리관·비상계획관·문화공 보설 및 내무국 소관 사항에	4. 감사 4개 가. 서정세선에 관한 사항 나. 봉사설명 및 민원 감사 다. 중요사업 추진확인 라. 재무국·산업국·녹지국 및 주 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비 위조사 및 경제 제청 마. 지하철 건설본부 및 농촌지도 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비위조 사 및 경제 제청 바. 암행감사

사. 특명간사(소방본부를 포함하되)	마. 기타 뉴지분야에 관여되는 사
제 15 조(순찰담당관) ①순찰담당관	4에 대한 순찰
법에 순찰 1개·순찰 2개와 순찰 3개 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순찰 3개
②순찰담당관의 제1별 분장사무는 다 음과와 같다.	가. 무리가 결집의 단속상황 순찰 나. 광장전통 및 위험 전찰의 정
1. 순찰 1개	비상황 순찰
가. 도로 및 뒷골목의 경비 상황 순찰	다. 위험 전수는 단속상황 순찰
나. 거리환경 경비상황 순찰	라. 위험즉대 및 담질점이상화 순
다. 거리질서 확립상황 순찰	찰
타. 공공시설물의 경비상황 순찰	마. 아파트주변의 환경경비상황 순찰
마. 상황실 관리	비. 기타 선수 및 주의분야에 관 여하는 사항에 대한 순찰
비. 순찰기 동태와 운영	제 16 조(총무과) ①총무과에 서무제 의전제·차량제와 관리제를 두고, 서 무제가 의전제장과 차량제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관리제장은 지방경기 기자로 보한다.
사. 비위공무원의 정체 체침	②총무과의 제1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아. 담당관내 다른 제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무 제
2. 순찰 2개	가. 보안 관리
가. 뉴지시설 경비상황 순찰	나. 기밀조회 등 회의실 관리(기 상통신을 포함한다)
나. 민야·개간지·절개지의 경비상 황 순찰	다. 관적 및 청중단속
다. 사방 및 조립상황 순찰	라. 본청 기동적 공무원과 고용인
라. 공원 및 유원지의 경비상황 순찰	

74-10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 7. 5
의심용·심구 및 징역 (특별회계 소속 및 자동차 운전원은 제외한다)		(본청·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 한다)	
마. 청내책원 후생사우의 지도감독		4. 관리 계	
바. 시립운동장 운영의 지도감독		가. 본청 건물의 부대 사업공사	
사. 청내 방송실의 운영		(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아. 직원 채워 향상과 서울특별시 체육회 운영		나. 본청 영조를 수리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감독 (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자. 다른 국·실·과 및 국내 다른 과·제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본청 영조 분의 전기·위생·냉방·급수·기타 기계설비의 시설 개수 및 시공감독 (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2. 의 전 제		라. 광역·전파 및 시청앞 광장의 관리	
가. 회식·행사·전례 및 접대에 관한 사항		마. 파·실의 배정	
나. 외국 또는 외국 기관간의 신의에 관한 사항		제 17조 (인사과) ① 인사과에 조직관리 제·보임 1계·보임 2계·고과제와 전형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 기타 신의에 관한 사항		② 인사과의 각 계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3. 차 림 계		1. 조직관리 제	
가. 시유차량 (기업회계 제외)의 조정·구입 및 배정		가. 직제 및 정원 관리	
나. 본청 차량정비		나. 인사제도와 조직운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다. 본청 유류배정		다. 위임전결권의 구분	
라. 차량비용 결정 및 관리전환		라. 직위분류에 관한 사항	
마. 운전원 임면 및 지도감독			
바. 차량비 예산의 조정 및 배정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74-11

- 마. 조직 및 인력집단에 관한사항
바. 일시정월 소요판단과 고용원
의 기관간 진보
사. 공무원의 후생 및 보수
아. 직원상조회 운영의 자료감독
자. 파내 다른 부서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
2. 보임 1계
 행정직 및 법정직 공무원의
 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
 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직위해제 및 전임과 전출
 나. 신상변동 및 선분에 관한 조
 회와 인사관제 계승의 경우
 다. 각종 시설요구 및 등록증명과
 의 등록과 주체의회
 라. 인사기록 정비교관 및 신작
 등재
 마. 경력평정과 충진심사위원회 운영
 바. 시간직 경직 서가
 사. 공무원의 재산 등록
 아. 군사전호 대상자 확인 규정
 (행정직, 고용원 고등)
 자. 연금사무 (공무원)
 장단 (행정직, 고용원 고등)
4. 고과제
 가. 공무원의 고무평정 및 고과
 평정조정위원회 운영
 나. 공무원의 제 1 청가권 및
 근무 경리
 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라. 보통경계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운영 (정책사항)
 마. 복무에 관한 비위공무원도
 조사 처리

74-12 제 384 호 그 1 시

부 1973. 7. 5.

바. 공무원의 해외출장 및 관외 출장	포장 사. 구정비 예산 편성 및 구정비 배정과 조정
나. 공제심사위원회 회운영 및 포장	아. 구청에 배정하는 사업비 예산의 합의
아. 청원 신상상 담소 운영	자. 구, 동의 공무원의 인사 내선에 대한 합의 및 내선(행정체에 한함)
5. 전 학제	차.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4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 학과 특별 채용시 할	2. 지도계
나. 4급이하 공무원의 증진시험, 전직시험과 기타시험	가. 구행정의 지도 감독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나. 구행정의 실적 심사
라.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 향상	다. 시의회에 관한 사항
마.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의 운영
바. 인사위원회(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운영	마. 기부금품 및 각종 잡부금의 모집통지와 지도
사. 공무원의 해외出差자 추천	바. 구, 동민체 전정의 처리
제 18 조(행정과) ① 행정과에 행정계, 지도계와 행정관리체를 두고 지방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 구 종합감사 지원
② 행정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아. 시민의 대학운영
1. 행정계	자. 행정서사 및 소개명령 지도 감독
가. 구, 통행장의 좌장 및 통제	차. 구 행정관계 성안문서 및 회의 통제
나. 구 행정시체의 수립 및 운영	카. 표준동 육성
다. 구, 동의 빙정, 위치, 구역의 변경	3. 행정관리체
라. 지방광판 회의	가. 사무관리 개선 및 능률 향상
마. 구 행정관계 회의	나. 민원사무 처리지침 및 지도
바. 모임 등, 반장 및 모임시간	

제 384 호 그 1

- 다. 민원서류 편함의 작성 및 관리
 라. 주민등록 사무의 지도 감독
 마. 단위 업무 및 관리적 업무개선
 연구발표회
 바.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뱅크 운영
 사. 호적, 인감에 관한 사항
 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자. 사무이양에 관한 통합 계획
 제 19 조 (시민과) ① 시민과에 문서통
 체계, 민원처리체와 문서관리체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② 시민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통체계
 가. 공문서류의 접수 및 발송
 나. 문서 처리 주관회의 지정
 나. 문서의 통제 및 자구수집
 라. 분인판수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처리체
 가. 당당자 전경로 발급되는 민
 원서류의 처리
 나. 기타 민원서류 접수·제공·보
 사무처리

보

1973.7.5 74-13

- 나. 국제결혼 신고와 외국인 등
 품 및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관한의 특별법령
 라. 각종 대장의 일람
 마. 민원 상담
 바.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사. 품연신고 및 편법료에 관한사항
 3. 문서관리체
 가. 문서의 보관, 보존문서의 일
 람, 대출 및 문서창고관리
 나. 문서의 천철 및 초기준비
 관리
 다. 조례, 규칙, 협약, 고시, 공고
 및 예규문서의 번호 부여와
 천문 보관
 라. 보존문서, 차지도 및 토지대장
 등 관리판단
 마. 티·티설 및 택지수인 증명
 나. 차폐등사진 증명 및 공급상
 관 실 운영감독
 바. 각종 유인물의 통제
 제 20 조 (세마을 지도과) ① 세마을
 지도과에 세되계와 세마을지도계
 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 세마을 지도과의 계별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획지	주립 및 조정통제
가.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다. 세정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실행 및 실행실적에 관한 심사
나. 새마을사업의 실정평가	라. 지방세제와 지방세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의 연구, 개정 전의 및 정비
다. 새마을협의회 운영	마. 지방세법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사 및 이에 관한 문서의 보존, 보관
라. 새마을 협의회의 및 행사	바. 시세, 세입예산과 계정비의 조정배분
마. 성금 및 성품의 제작	사. 구제무형정의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
바.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아. 시세 정수사무의 처리과 지도감독
2. 새마을 지도계	자. 시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통계보고
가. 새마을사업의 추진과인 및 지도	차.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
나. 새마을사업의 통계 및 분석	카. 징수 유예 신청의 처리와 납세연장의 승인
다. 새마을사업의 홍보와 관한 사항	타. 시세 체납처분에 대한 제조사 및 실사청구와 경송의 처리
라. 새마을 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파. 과오납의 충당, 환부 및 교부금 사무
마. 새마을사업 교본의 작성	하. 징수금 암설사고의 처리와 절손처분의 지도감독과 국내 다른 파 및 과내 다른 계의
바. 새마을사업 기록의 보존	
사. 새마을 상황실 운영	
제 21 조 (세정과) ① 세정과에 세정제, 세원제, 지계계와 자료처리계를 두고 세정제장, 세원제장과 지로처리제장은 지방경사주관으로, 지적제장은 지적기과로 보한다.	
② 세정과의 계별 분장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정제	
가. 국소급 행정의 관할 조정	
나. 세정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주관에 관여지 아니한 사람	가. 자직공부의 정리보존에 관한 제도감독
2. 세월제	나. 측량검사 (30 평 이상의 풍력 지, 도근측량, 산각측량, 학정측 량)
가. 주임제, 취득제, 공동차세, 유 용율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 세, 재산세, 농지세, 주민세와 특칙세에 대한 세월 개발의 지 도 감독	다. 지적설계 검사와 측량현도의 검사 및 사업
나. 시세에 대한 부과에 통계보 고와 시세 부과에의 징계	라. 지적에 관한 경제감정인 설정 마. 지적관계 세증명 발급에 관한지도
다. 시세에 대한 세원조사와 사 찰 및 유용율식세의 경영실태 분석, 풍물·재정확인 및 균형 조정	나. 계단 척계
라. 부동산 및 전략에 대한 등 록세 과세 사가포준에 책정승 인 신청	4. 자료처리지
마. 농지세 소득표준을 결정 및 차량, 경기, 주, 임목, 진물에 부착된 부대설비과 과세 표준 에 절정	가. 시정의 기자화 개혁의 수립 나. 기자재산조직의 관리및 프로그램 다. 전자재산에 따른 자료의 관리 및 보안의 문제
바. 시세이 대한 질의 조부과 재조사신사청구, 소원, 청원, 텔 현 및 행정사무의 처리	제 22 조 (회계과) ①회계과에 서무자, 세액계, 회계신계와 지출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회계과의 계단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 되는 소관국에 관한 사항은 회의회 되거나 방계정부 시정령 제 100 조에 규정된 출납검사는 고려하지 아니 하다.
사. 시세이 대한 법칙화의 처리	1. 서무계
아. 가속대장 및 과세대장 정비 보존의 제도감독	가. 주입증지의 수립 나. 공무원세정보충 제도의 운영
자. 토지증금의 설정 및 변경	다. 계측에 관한 사항
3. 지적과	

7.4-16	제 334 호고 1	시
라.	국채 소화에 관한 사항	
마.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본 청률률의 출납보관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계약 제	
가.	시비, 국비의 물품주입, 운반 및 대차와 용역 (단순한 인 부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계약	
나.	시비와 국비의 구수도급계약	
3.	회계 신사례	
가.	회계 예규의 정비	
나.	회계 문서의 과학조사 및 제수첨산	
나.	지 출원 인행위부의 처리	
라.	시비와 국비의 관수검주의 광사 검사 입회	
4.	지 출 제	
가.	본청 소관 시비의 지출 및 지출의 충당	
나.	시비와 국비의 지출	
다.	시급교대 관한 사항	
라.	세입, 세출의 원금의 충당	
123조 (판재파) ①판재파에 재산 충당제, 재산처분제와 지산감정제를 두고 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판재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보	1973.7.5
각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 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제외 한다.	
1. 재산충당제	
가. 시유 재산제도의 조사 기록 및 순용	
나. 시유 재산의 충당과 조정통제	
다. 시유 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라. 공용, 공공용재산의 취득, 차입 마.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차입 양수, 공유화, 불하	
바. 공용·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 및 불용 재산의 매각체결	
사.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처분제	
가. 매각, 책정된 재산의 매각처분	
나. 재산처분에 따른 축량	
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수령 라. 매각체결 재산의 보존, 관리	
3. 재산감정제	
가. 취득, 매각, 교환, 보상가격의 사정 (자 회계 포함)	
나. 시유재산의 대부료 및 차입 재산의 일차료 사정	
다. 부동산 시가조사	
라. 시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p>마. 시유 창고의 관리</p> <p>제24조(보건행정과) ①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 식품위생과와 환경위생과를 두고 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보건행정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보건행정</p> <p>가. 국소판 행정의 종합조정</p> <p>나. 보건행정의 종합조정</p> <p>다. 보건소, 위생연구소, 장체장 및 보건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p> <p>라. 보건소, 위생연구소, 장체장 및 보건사무소의 예산 및 4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조정요청</p> <p>마.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p> <p>2. 식품위생</p> <p>가. 식품위생업소 허가(제조업소 계의)</p> <p>나. 조리사의 자격부여 및 지도감독</p> <p>다. 시민영양의 개선지도와 식생활의 지도</p> <p>라. 각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감찰</p> <p>마. 보건소 식품위생행정의 지도(식품제조제의)</p> <p>3. 환경위생</p> <p>가.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허가</p>	<p>나.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단속과 위생검찰</p> <p>다. 이용사, 이용사의 자격부여 및 지도감독</p> <p>라. 부정식품 및 보건법과 사업의 단속</p> <p>마. 묘지 및 화장장의 지도</p> <p>바. 보건소 환경위생행정 및 식품제조관제 행정의 지도</p> <p>사. 유기장의 허가 및 지도단속</p> <p>제25조(보건예방과) ①보건예방과에 방역과, 간호사업계와 다약계를 두고 방역과장은 지방보건기관장, 간호사업계장은 지방간호기관장, 마약체장은 지방마약기관장으로 보한다.</p> <p>②보건예방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방역과</p> <p>가. 각종 전병의 방역 대처 종합설립 조사 연구</p> <p>나. 법령 전임인의 제정 및 편리화</p> <p>다. 경호 및 공연 공중당의 관리</p> <p>라.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p> <p>마. 방역사무소 운영의 지도</p> <p>바.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간호사업계</p> <p>가. 간호원, 조사원의 신고 및 단속</p> <p>나. 간호원, 조사원의 교육, 조정 및 단속</p>
--	--

74-18 개 364 호그 1

[시]

보 1973.7.5

다. 진호사업에 대한 각종 통계 리, 산업보건 및 보자보건에 관한 한 사항
마. 가족계획의 지도
바. 정신위생, 우생보건에 관한 계통지도
사.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아. 보건교육에 관한 시사
3. 마약처
가. 마약의 제제 신청의 철달
나. 마약류 취급자 면허 신청의 진달
다. 마약사비 및 승판한 약품 사법의 단속
라. 기타 마약관리의 문제
마. 마약의 수급
바. 한의 마약제제의 허가
제 26조 (의약과) ①의약과는 병원 운영재, 의무재와 약무재를 두고. 병원 운영 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무재장은 지방의무기과는 약무재 장은 지방약무기과로 보낸다. ②의약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운영재
가. 시립 병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나. 병원비 예산의 조정 및 배정
다. 과내 다른과의 주체에 속하며

아니하는 사항
2. 의무재
가. 의료제도 및 의료의 보급 향상
나. 새마을 의료사업의 추진
다. 비영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휴업, 폐업
라. 부경의료사업자회 단속
마. 의료에 관한 각종 통계
바. 구묘정원과 처리
사. 의무선 판리
3. 약무재
가. 의약품등 제조업 및 제조품 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진달 (독, 국물포함)
나.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 약사 임시업무
제 27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재 노동계, 구호계와 직업안정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회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체
가. 시민복지행정의 종합체계 수 립과 종합조정
나.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의 일; 허가와 지도; 감독
다. 사회복지사업, 품자자 지원

하. 불가·양도등의 복지시설 지 도·감독	한 사항
하. 화재·다른 재화·주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 후생식당 운영지도
2. 노동개	4. 직업안정제
가. 노동행정의 조사업안	가. 직업안정에 관한 조사업안
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나. 시립직업안정소 운영의 계도 및 감독
다.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다. 1, 2종 직업 안내소와 일· 허가 및 지도감독
라.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타. 일일취업안전에 관한 사항
마. 근로동법에 관한 사항	마.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바. 채불노임에 관한 사항	바. 직업안정소 종사원의 교양지도
사.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사. 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아. 시 노동위원회 업무협조	제 28 호 (부녀과) ①부녀과에 부녀보 호자와 부녀지도제를 두고, 제정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부녀과의 개설·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단체협약의 조정·裁定에 관한 사항	1. 부녀보호제
차. 시립근로자회관 및 근로복지 관 운영의 감독	가. 가정과 여성의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가정복지 사상의 보급
3. 구호제	나. 가정상담과 지도
가. 성보자, 병세인 및 재해등위 구호제·관한 사항	다. 여성단체(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나. 자조·근로에 관한 사항	라. 부녀복지 범인 및 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다. 행여병자 및 행여사망자 치 례에 관한 사항	마. 가정조사 및 유포호여성의 조사
라. 의원도인·용자동의 사후 관리	
마. 시립영세인 및 구호·복지· 설에 관한 사항	
바. 지방구호협의회의 운영에 관	

7-4-20 제384 호그 1 시 보 1973.7.5.

<p>바. 요 보호여성의 보호지도 및 인권옹호</p> <p>사. 시립부녀복지 시설운영의 감독</p> <p>아. 부녀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종사자 훈련</p> <p>자.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부녀지도제</p> <p>가. 일반여성의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p> <p>나. 가정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및 연구</p> <p>다. 지역개발을 위한 여성의 지도 및 시설의 운영</p> <p>라. 부녀생활 시범등의 육성</p> <p>마. 부녀지도자의 양성</p> <p>바. 부녀교실의 운영</p> <p>사. 이성능력의 개발을 위한 시설운영 및 가정사업의 생산지도</p> <p>아. 노비자 보호를 위한 지도 및 계몽</p> <p>자. 가정의례 준칙의 보급</p> <p>차. 여성단체 활동의 지도</p> <p>가. 기타 부녀의 지도 계몽</p> <p>제29조(아동과) ① 아동과에 아동 복리제와 아동시설기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아동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아동복리제</p> <p>가. 아동 및 청소년의 복학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p> <p>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시영복지시설의 운영지도 및 감독(아동상담소는 제외)</p> <p>다. 아동복지관제 사단법인의 지도육성</p> <p>라. 학아시설의 지도 감독</p> <p>마. 아동복리시설의 육성</p> <p>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아동시설제</p> <p>가. 요 보호아동에 관한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p> <p>나. 유아와 특수시설 관계법령 및 시설의 인·허가와 지도감독</p> <p>다. 아동상담소 운영의 지도·감독</p> <p>라. 기타 부랑아, 정신박약아, 거제부자유아, 놓아, 맹아 기타 불량아동의 보호와 신도</p> <p>마. 아동 윤양화의 방지 및 보호 아동의 후견인 지정</p> <p>제30조(청소년과) ① 청소년과에 서무제, 자원제와 장비제를 두고 계</p>
---	--

<p>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청소 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서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청개차량의 각종 사고의 보상 다. 오물수거 수수료의 과정 라. 진개폐자리 수수료의 과정 마. 청소장비 및 용품구입 바. 국내 다른과 및 국내 다른 계의 주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작업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개처리 및 처분장의 조정 나. 청소주역의 책정 다. 오물불법처분의 감시·단속 라. 청소인부의 감독 마. 오물위급업 허가 바. 시민청소 관념의 제동 사. 진개수거에 관한 청원서처리 <p>3. 장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차량의 운영 및 관리 나. 기계, 기구류의 개량과 수선 다. 수화차의 운영 및 관리 라. 청소차량의 배제제회 마. 청소차량용 유류배정 및 조정 바. 살수차의 운영 및 관리 	<p>제31조(청소 2과) ①청소 2과의 업무계, 처리계와 위생시설계를 두고, 업무계장과 처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시설계장은 지방화동기과로 보한다.</p> <p>②청소 2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업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뇨차량의 각종 사고보상 나. 분뇨수거로의 과정 다. 분뇨수거장비의 구입·판매 및 용품구입 라. 폐내 다른과의 주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처리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뇨수거 처리의 종합계획 수립 나. 분뇨불법처분의 감시 및 지도 단속 다. 분뇨수거에 관한 신고 처리 라. 분뇨저장탱크 및 공중便소의 시설관리 계획 마. 분뇨성화조(수세식면스) 및 소화조설치 계획과 지도(판·신축건물에 따른 정화조설치면 무는 세의한다) 바. 분뇨수거 작업의 지도
---	---

<p>3. 위생시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뇨통발 처리방법의 개선 나. 과학적 분뇨처리장의 시설제 회 지원 및 관리 다. 간이 저장탱크 시설의 공사 비. 기타 분뇨처리에 따른 기술 사무 <p>제 32조(환경파) ①환경파에 기획계 와 지도체를 두고, 기획계 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지도체장은 지방 보건기관장으로 보한다.</p> <p>②환경파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기획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해해책의 종합운영 나. 공해관계위원회 운영(분쟁조 정 사무체의) 다. 공해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제동 라. 공해행정제도의 입구발전 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 및 변경허가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p>2. 지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해발생원의 감시총괄 나. 진진의 처리 사항 및 분쟁 	<p>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행정처 분(시설개선 명령, 이관명령, 조 업정지 등) 라. 배기, 수질오염 및 소음, 천 동발생원의 대책수립과 연구발전 <p>제 33조(상정파) ①상정파에 상정계 소비자보호체와 계량체를 두고, 상 정계장과 소비자보호체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계량체장은 지방기계 기자로 보한다;</p> <p>②상정파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상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시장설립에 관한 사항 다. 시장판계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라. 도매시장운영 및 지도·감독 마. 도매시장 개발계획수립 및 등록조정 바. 회전기금 운영 사.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소비자보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통구조의 개선
--	--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74-23

나. 물가조사 및 조정과 단속
다. 상품권의 규제

라. 상품화의 소외 지도 감독

마. 특정 외래품에 관한 사항

바. 소비자 보호

사. 가격표시제 및 상도의 양양

아. 서울특별시 유통체계 개선위원회 운영

자. 주요생필품 비축사업

3. 계량기

가. 계량의 연구 및 조사

나. 계량기검사 및 점검과 지도

다. 미터법실사에 관한 사항

라. 계량기 사업 관리

제 34 조 (공업과) ①공업과에 공정

제, 중소기업과 표준제를 두고,

제장은 기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업과의 제별 분경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제

가. 공정지역 조정 및 개발

나. 영과 조선에 관한 사항

다. 공업에 관한 사항

라. 공업전용위원회 운영

마. 기계화학동 특정공업의 육성

바. 물량기본조사 및 협황파악

사. 국내공업생태의 운영

야.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소기업과

가. 중소기업육성체계의 수립

나. 전문화 및 체밀화의 추진

다. 수출전환정책 확성

라. 중소기업과 시비재정 지원

마. 통화사업 육성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일가

및 지도 감독

사. 영세기업의 육성

다. 수출전환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자. 수출전환농지과 기타 수출업무

3. 표준제

가. 세이·스노시·내가동체의

사. 후관리

나. 일관률성증거 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전기용품과 세즈전력 및 사후관리

라. 전기증차수과의 세이·스노·후관리

마. 공기조湿화 사업과 관리

바. 전파사업

자. 전기기능자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연료과) ①연료부에 '연료부', 도시가스부와 연로개방부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연료과의 세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계

- 가. 연로수급계획의 수립
- 나. 무연탄 수급 및 생산유통
- 다. 서울특별시 연료비체위원회 운영
- 마. 석炭 및 난방시기 개량화 연구
- 바. 무연탄 품질관리 및 관할 사항
- 마. 인탄가스 위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사. 개량연소기구 및 시설의 연구
다. 과정 다른계의 드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가스부

- 가. 도시가스 공장건설 및 관리
- 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
- 다. 도시가스 시공업자의 저정
- 라.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저정 및 배관공사
- 마. 도시가스시공 기자재의 규격화
- 바. 도시가스 연소기구개발과 보급

사. 도시가스사업소 운영의 지도 감독

마. 기타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3. 연로개발계

- 가. 고압가스의 제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나. 고압가스 용기 및 그 부속 기구의 제조 및 수리
- 다. 석유류의 수급에 관한 사항
- 라. 유류(윤활유, 구리스, 자동차 등 부레이크액)의 품질관리
- 마. 지역 생·난방의 지도 감독
- 바. 연로시 험소운영의 지도 감독
- 사. 전기주입기술자의 자격검정
- 아. 자가용 전기공작물 및 건열에 관한 사항

제 36 조 (농정과) ①농정과에 농정계, 수산물계, 축산계와 가축위생계를 두고, 농정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산물제장은 지방수산기과로, 축산제장은 지방축산기과로, 가축위생제장은 지방수의관으로 보한다. ②농정과의 세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정계

- 가. 농업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통제
- 나.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협동조

한 (복수조합 포함)의 지도 감독	가.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다. 동물약품 및 치료용구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다. 농업생산 및 장려계획의 수립 라. 전작 및 단작에 관한 사항 마. 농업통계의 조사 바. 농업자재의 수급 사. 농업생산분 및 시설지대의 재해방제 아.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마. 우육등급판매에 관한 사항 바. 부경축산물 단속 사. 수의사면허 및 가축병원의 관할 사항 아.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의지도감독
2. 수산물계	제 37 조 (양정과) ① 양정과의 양정제 관리계, 경리계와 조작계를 두고, 계장을 지방성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양정과의 직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어업 및 어선전조에 관한 사항 나. 수산용자재의 수급조절 및 수자원의 조사 다. 수산증진 및 수산배포에 관한 사항 라.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마. 수산자재 생산의 지도 감독 바. 수산시설 및 관리 사. 수산시장 관리 아. 내수면 어업의 지도 육성	1. 양정계 가. 양목의 수급계획 나. 윤·분식·지도단속 다. 배터양목의 관리 라. 보관창고의 지정 마. 양목관리 유통회계 비용 및 소보증의 출납과 보관 바. 양목신의 허가 사. 안목의 유통단속 아.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축산기	2. 관리계 가. 정부 양목의 보관, 판리 및 사고처리 나. 정부양목의 수불과 결산 다. 정부양목의 낙출과 백출
가. 축산장례에 관한 사항 나. 사료 및 축산자료의 수급 다.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라. 종축 및 가축 인공수정 마. 목야개량 및 목장경영의 지도 바. 축산단체의 지도 육성 사. 축산사업의 사후관리 및 분석과 통계 아. 가축세 감운영의 지도 감독	
4. 가축위생계	

74-26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라. 경부양곡의 재고, 파악과 보 관료의 확인	지도
마. 경구양곡의 수매	다. 조경위원회의 운영
3. 경비개	라. 국내 다른파 및 파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 출의 경비	2. 조경 2계
나. 경부관리양곡의 조작, 도급제 약체결 근거당권술성 및 해약	가. 특수시설 조경
4. 조작제	나. 조경시범지구 조성 및 연구
가. 경부관리양곡의 가공과 포장 용 고용품의 수급관리	다. 농지·공간·축화 및 노면꽃심기
나. 당국부산물의 생산과 배도처분	라. 거리환경미화사업의 계획 및 통제
다. 가공공장, 도정이, 지정공장의 터가 및 선정과 시도 감독	마. 다른국, 실,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조경사업의 시행
나. 양곡도정을 시설 및 양곡가 공률 관리	바. 기념물의 시설 및 관리
마. 양곡의 시·도찰의 조작수송 및 시내창고간의 조작운반과 조작비의 확인	제 39조 (녹지파) ①녹지파에 임정 제, 사방조밀제와 보호제를 두고, 임정제은 지방행정사무판으로, 사 방조밀제장과 보호제장은 지방농립 기좌로 보한다. ②녹지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38조 (조경파) ①조경파에 조경 1 계와 조경 2계를 두고, 조경 1계장 은 지방행정사무판으로, 조경 2계장 은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②조경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정제 가. 국유 임야의 관리 나. 임야내의 행위 허가 다. 파소판세산의 조정 라. 녹지사업소 및 양묘장 운영의 지도 마. 파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1. 조경 1계 가. 도시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 조경사업시행의 조정통제와	

제 304 호고 1

시

보

1973.7.5 74-27

2. 사방조합체

- 가. 사방 및 조치의 조성(철거 및 포함)
- 나. 조립·양묘 및 수목의 수급
- 다. 사방지의 지정 및 시공지의 관리
- 라. 시민법수 및 죄수 권리
- 마. 노년 및 어터의 정비

3. 보호체

- 가. 그린벨트의 보호 및 단속
- 나. 임야의 보호 및 단속
- 다. 임야대책 예방시설 및 관리
- 라. 임산물의 유통단속 및 저도
- 마. 야생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령의 지도

바. 산림재충익 방제

사. 산림감시 및 사법사무

아. 노수립 및 보호수의 관리

제 40 조(공원과) ①공원과에 공원관리체와, 공원개발체를 두고, 공원관리체장은 지방동립기관으로, 공원개발체장은 지방토목기관으로 보한다.

②공원과의 제별 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관리체

- 가. 공원·유원지 및 녹지대의 유지 관리

나. 공원·녹지대·사로수의 철제 및 관리

- 다. 공원내의 각종 행위허가 및 사업집행 허가
- 라. 공원용지 및 재산의 관리
- 마. 공원 관리사무소의 지도
- 바. 과내 다른 베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풍원개발체

- 가. 공원·녹지대 개발 계획의 수립
- 나. 미시설공원 및 유인지의 개발
- 다. 미시설 공원개발의 설계·시공 및 감독(토목·건축·전기등의 구조물)
- 라. 시설 공원의 확장 및 수요

시설의 시공

마. 갈수대의 시설 및 관리

제 41 조(경무과) ①경무과가 경무체 기회체·인사체·승진체·감찰체·옹보체와 민원봉사실을 두고 제장과 실장을 경성 또는 경남으로 보인다.
 ②경무과의 제장은 봉사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무체

- 가. 경찰연혁
- 나. 복무규율
- 다. 의식 및 회의
- 라. 청사 환경 감독

78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 마. 당직지정
- 바. 직원 건강관리
- 사. 직원 교육·교양 및 상무
- 아. 경찰관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 자. 국내사무 인재인수
- 가. 경무현의 및 직원후생
- 카. 보안업무 관리
- 다. 자회경비 지도감
- 라. 제 2 기동대 선발
- 하. 보호 업무관리
- 거. 문서 수발·통제 및 관리
- 너. 직인판수
- 디. 국내 다른파 및 파내 다른
계의 주판에 속하기 아니하는
사항
- 2. 기획개
- 가. 일반계획 및 조사관리
- 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다. 행정감사
- 라. 경찰조직 및 정시 관리
- 마. 행정간소화
- 바. 예산심사
- 사. 법제 및 행정소통 업무지도
- 아. 경찰관학
- 자. 경찰제도
- 작. 경찰통계
- . 인사제

- 가. 경찰관(고용원·기능직 포함)
임용
- 나. 경력평정 및 근무성적 평정
- 나. 경과분류
- 라. 인사기록 관리
- 마. 인사통계
- 바. 청원경찰관 임용
- 사. 정기승급 사정
- 아. 공무원 연금
- 자. 신분증명서 발급 및 흥장관리
- 차. 포상상선 및 수여
- 4. 경리계
- 가. 예산편성 및 결산
- 나. 국고금 및 시비출납
- 다. 정부 유가증권 출납
- 라. 세입·세출·현금출납
- 마. 경찰후생 금고
- 바. 물품조사
- 사.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 아. 금전여물 출납보관
- 자. 회계감사 및 지도
- 차. 국고 재산 유지 관리
- 까. 공사계획 집행
- 5. 감찰계
- 가. 경찰관 비위조사 및 첩보수첩
- 나. 감찰 진정사건 조사처리
- 다. 경찰관·정책업무 처리

제 314 호 그 1

시

보

1973.7.5 30-29

라. 소청사건 처리	다. 흥신업 허가 및 단속
마. 행정감찰	라. 유통물 처리
바. 경찰관 선별조사 및 현장	마. 협동기 검사 및 단속
6. 공보계	바. 교통상 및 전당포지도 단속
가. 경찰공보활동	사. 사령행위·운락행위 광고물 지도 단속 및 사회주 기 정화
나. 공보간행물 배부	아. 종포 화약류 허가 및 지도 단속
다. 사전설 운행	자. 즉결심판청구 일무지도 감독
라. 기자실 관리	차. 과내 나문재의 수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마. 직장 문화체육 활동	2. 산림지
바. 경찰국 방송실 운영	가. 산림의 도발·남벌·파벌·행위 단속
사. 경찰악대 운영	나. 부정 임산물의 운반·보관·취 득·양여행위 단속
7. 민원봉사실	다. 불법 산림개간 단속
가. 민원사무접수 배부	라. 산림무대물(낙엽·생자·주근 토식·무단채귀·굴지·경위단속)
나. 민원상담 및 안내	마. 불법 수렵행위 단속
다. 자과 민원사무처리지도 및 확인	바. 압수작 보호 단속
라. 미아·가족인 수배	사. 기타 산림녹화 저해요인 제 거를 위한 제작 및 기도
마. 유실물 및 습득물 수배	3. 외근지
바. 선진 빅보김열(광고물 허가 는 계획)	가. 외근업무 제작 및 기도교수
제 42조(보안과) ①보안과에 보안계 산림계·외근계와 소년체육 팀교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보안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시범파출소 설치 운영 업무
1. 보안계	
가. 보안업무 계획 및 조성	
나. 과내직원 복무 및 인사	

74-30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 다. 호구조사
 라. 방범 계획 및 지도
 마.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 예방 조치 (풍수설하는 계획)
 바. 구허가 건축물 단속
 사. 수상사고 예방 및 조치
 아. 유선영업 허가 및 단속
 자. 바범수찰대 운영
4. 소년계
 가. 소년 경찰 업무 지침 및 지도
 나. 소년의 보도상단 차질 관리
 치도
 다. 소년 범죄 예방 대책 제 2, 3 항에 해당하는 보호사건의 취급 지도 및 비록 소년 선도
 바. 미성년자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운영 지도
 마. 공연장 지도 단속
 바. 미아 가출인 업무 처리
 사.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 및 민간 청소년 보호 단체 지도 육성
 아. 여자경찰관 지도
 자. 소년 유해환경 개선 단속
- 제 43 조 (교통파) : ① 교통파에 교통계 교통안전계, 면허제와 수ナン제를 두고 채장 및 대장은 지정 또는 경감으로 보인다.

② 교통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계
 가. 교통경찰 업무 계획 및 조정
 나. 과내직원 복무 및 인사
 다. 교통경찰관 교양
 라. 교통안전협회 운영
 마. 자동차 위장번호 관리
 바. 자동차교습소 학사 및 시설
 감사
 사.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면허제
 가. 운전면허 시험 관리
 나. 운전면허 대장 관리 및 통계분석
 다. 운전면허에 관한 진정서 조사
 처리
 라. 안전회관 운영 관리
 마. 면허시험장비 및 시설에 관한 예산집행
 바. 운전면허 교부
 사. 적성검사 관리
 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집행
 자. 교습소 기능시험 일회
 차. 기타 운전면허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계

가. 교통구체 및 통제관리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운전과 교양관리	1. 경비계
다. 교통경찰관 지도감독	가. 일한경비 계획수립 및 조정
라. 민간(모범운전자) 교통경찰 대 운행	나. 차내 직원복무 및 인사
마. 교통정보센타 운영관리	다. 비상소집실시 및 비상방역
바. 교통사법 단속 제화 및 지도	동원
사.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및 분석통계	라. 야간운행증 발급
아.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보고서 관리	마. 속도시설 경비 지도감독
자.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요구	바. 청원경찰 지도 감독
차. 운수행정 업무협조	사. 대사경비
가. 교통안전시설 관리	아. 대중교통 철안 및 제2기동대 운영(선발운 씨의)
다. 교통사고처리 및 분석통계	자. 외국공관 경비
라. 표류사고 방지대책 수립	차. 차단분체관 경비
하. 교통사고차량 행정처분	카. 차내 다른 이의 주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계. 교통안전지도 제작	2. 경호전
네. 도선장 '단속'	가. 경호경찰에 관한 계획 및 지도 감독
다. 순찰대	나. 경호 경비자료의 관리유지
가. 교통 기동순찰	다. 경호경찰에 관한 교양
나. 요새경호	3. 작전체
제 44 조 (경비과) ①경비과에 경비계 경호계·작전체·장비체와 기마대를 두고 계장은 경찰 또는 경찰으로 대장은 경찰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경비과의 제(대)별 분장사무는	가. 작전체의 수립 및 실시 나. 전투 훈련 및 교육 다. 대간첩 넘의회 운영 및 협조 라. 전투경찰대 및 초동대격비 운영 지도

14-32 제384호 그 1

보 1973.7.5

- 마. 작전초소 지도 감독
바. 기타 작전에 관한 사항
4. 장비제
가. 경찰장비 (파복 및 통신장비 제외) 관리
나. 경찰차량 및 차량공장 운영
다. 차량정비 요원 및 운전원 교육 감독
라. 경비정 운영 관리
마. 유류 주입출납
바. 경찰차량 배치 및 운영
사. 차량부속품 출납
아. 차량관리 유지 및 소요예산 편성
자. 경찰무기 탄약·화학탄 위급재물 관리
차. 경찰무기 탄약고 관리
카. 무기감사
타. 무기사고 처리
5. 기마대
가. 기마승찰 및 경비
나. 기마경찰관 교양
다. 기마관리
제 15조 (방위과) ①방위과에 방위제
가. 인방공제를 두고 제작은 경정 또는 경각으로 보한다.
②방위과의 제별 분장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제
가. 예비군동원 운영 및 복무구율
나. 예비군판제 청보
다. 예비군자원 관리
라. 예비군운영 관악 및 상회

- 관리유지
마. 예비군 원호 및 보급지원
바. 방위소집자 운영 관리
자. 과내 지원복무 및 인사
아.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방공제
가. 민방공 계획 및 조정
나. 민방공 교육 훈련
다. 민방공 시설관리 유지 (남산 정보기 제외)
라. 풍수설해의 경찰대책
마. 민방공기구 조직 운영
제 46조 (통신과) ①통신과에 통신계를 두고 제작은 경정 또는 경각으로 보한다.
②통신과의 통신계 분장사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경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통신자재 관리 및 보수
다. 유무선 통신시설의 운영
라. 112 지령실 운영
마. 통신기술요원 (교환원 포함) 지도 감독 및 교양
바. 경찰방송 시설유지 및 보수
사. 경비전화선로 공사 및 보수
아. 무선통신 암호조립 분석
자. 일제지령실 운영
차. 통신보안 및 기밀유지
가. 민방공 경보기 관리유지
제 47조 (수사과) ①수사과에 수사계

경제계와 관식계를 두고 재장운

경쟁 또는 경강으로 보한다.

② 수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1. 수사체

가. 수사경찰에 관한 제의 및 지도

나. 민원사건 (고소·고발) 조사 처리

다. 사기사법 (네다바이 제의) 수사

라. 수사경찰 자질증명에 관한 고양

마. 윤처장관리 및 호송업무 지도

바. 범죄수사 지도 및 연구

사. 형사업무 처리

아. 특별사찰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자. 법적 통제분석

차. 파내 다른체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경제체

가. 일수 (특정의례를 포함) 날

세사법 수사

나. 금융 (무정수표·의한사법)
및 물가사찰 수사

다. 기타 경제관제 위반사건 수사

라. 마약사법 수사

3. 관식체

가. 관식 운영 및 통제

나. 지분지로 수집·내조 및

전과자 기록관리

다. 면사자 신체조사 및 기록관리

라. 의뢰자 면접법 수사 및 자동
차사고 감정

마. 축출·감정 및 허언증자인 혼령

제 49 조 (형사과) ① 형사과에 지능체

경쟁체와 도법체를 두고 재장운
경쟁 또는 경강으로 보한다.

② 형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1. 지능체

가. 지능법 범죄수사 (네다바이
포함)

나. 경예·선동·업무방해·공무원
법과 및 신체대책 수사

다. 일민사건 수사

라. 가내적인 부무 및 인사·

마. 관내 다른체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력체

가. 중요사법 및 치사상 도주차량
의 조동수사 및 현장 관식

나. 살인·강도·강간·간화 및 천
파사건 수사

다. 특별사건 수사

3. 도법체

가. 절도 (금괴파괴·자동차도난 등)

74-34 제 384 호 그 1

보 1973.7.5

<p>중요사자) 사건수사</p> <p>나. 수법 및 공조 계획운영</p> <p>다. 장물증표 작성 및 수사</p> <p>라. 외국인 및 선전도널 수사</p> <p>마. 소매하기 사법 수사</p> <p>바. 경찰서 330수사대업무 지도 감독</p> <p>제 49 조 (정보과) ① 정보과에 정보관리계, 정보제화 대공제작 등 두고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p> <p>② 정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정보관리계</p> <p>가. 정보경찰 업무제작 및 지도</p> <p>나. 과내직원 복무 및 인사</p> <p>다. 신원조사</p> <p>라. 대공정보비 취급</p> <p>마. 정보경찰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p> <p>바. 정보기록실 운영</p> <p>사. 정보장비 관리</p> <p>야. 과내 타제 주관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정보계</p> <p>가. 정보수집 계획</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p> <p>다. 진의에 관한 업무</p>	<p>3. 대공계</p> <p>가. 대공공작 계획 및 분석 평가</p> <p>나. 대공 정보망 운영</p> <p>다. 요시활인·동래파악</p> <p>라. 정보수집·공작</p> <p>마. 간첩검거·공작</p> <p>바. 방첩·업무</p> <p>사. 진급 신원조사</p> <p>아. 남북회담자료 조사</p> <p>자. 경호안전 대책업무에 관한 계획 및 지도 감독</p> <p>차. 경호안전 위해사법에 관한 자료수집 및 수사</p> <p>카. 경호안전 대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p>

제 50 조 (의사과) ① 의사과에 의사계 1 계·의사계 2 계와 의사계 3 계를 두고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의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계 1 계

가. 의사경찰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도

나. 의사첩보 종합분석

다. 외국인 및 이에 관련된 신원조사

라. 출입국자에 대한 사찰

마. 파내 직원 복무 및 인사 바.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7) 외국 장기간 생활 수입·액포 에 관한 법률위반 (8) 기타 대일 의사 경찰법위반
2. 의사제2계 가. 대일회사 접보수집 및 평가 나. 일본인·개일교포 출입국자 동태	3. 의사 제3계 가. 대일이익의 치사경보 수상년간 나. 대일이익의 해 외국인 및 동 해외 교도 출입주자 동태
다. 일본관계 의사 사법증 다음 법죄에 관한 사항 (1)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 밀항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라. 다음의 범죄로서 일본인에 관한 사항 (1) 형법 제2편 제1장 대란 및 제2장 외환사 규정된 범죄 (2) 형법 제3조 내지 제5조 에 규정된 범죄 (3)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 죄 (4) 외국환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5)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6) 강제회거의 대상이 되는 중요 범죄	다. 대일관계 이익의 의사 사법증 다음 법죄에 관한 사항 (1)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 밀항 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3) 다음의 범죄로서 일본인 이 치의 외국인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 제1각 내란 및 제2장 외환사 규정된 범죄 (나) 형법 제3조 내지 제5조 에 규정된 범죄 (다)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 죄 (라) 외국환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바) 강제회거의 대상이 되는 중요 범죄 (사) 외국 장기 간행물 수입배

<p>포에 관한 법률위반 라. 기타 대일이 외의 의사 경찰 업무</p> <p>제 51 조 (청와대 경비대) 청와대 경 비대의 하부조직 및 치무는 대통 령 경호실장이 지휘·지속한다.</p> <p>제 52 조 (국회경비대) ①국회경비대에 행정과와 경비과를 두고 과장은 경각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행정과에 행정과와 경비과를 두 고 계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 하고 계열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행정과 가. 파내 직원복무 및 인사 나. 의식 및 회의 다. 수칙 및 청내 속 라. 직원교양 마. 문서통제 및 관리 바. 직원판수 사. 대내 사무 일체·인수</p> <p>2. 경비과 가. 경찰장비 관리 나. 군대여물 관리 다. 물품 출납 보관</p> <p>③경비과에 경비과와 기호계를 두 고 계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 하고 계열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경비과 가. 경비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작전계획 및 훈련 다. 국회주차장 장비</p> <p>2. 경호과 국회회장 경호</p> <p>제 53 조 (기동대) ①기동대는 행정과 와 작전과를 두고 과장은 경각 또 는 경위로 보한다. ②기동대의 과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행정과 가. 대내직원 복무 및 인사 나. 문서 통제 및 관리 다. 감사·감찰·조사 라. 직원근태 마. 직원판수 바. 시설관리 및 유지 사. 지체경비 아. 급대여물 관리</p> <p>2. 작전과 가. 직원 근무계획 및 지정 나. 대원 교육훈련 다. 무기 탄약 관리 라. 통신기자 관리 마. 출병통제 바. 차량관리 사. 비밀문서 관리 아. 작전계획 자. 비상소집</p> <p>제 54 조 (중앙청 경비대) ①중앙청</p>
---	--

경비대에 행정계와 경비증대를 두고 계장(증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중앙청 경비대 계별(증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계
가. 대원의 복무규율
나. 중앙청 청사 경비기의 수립 및 근무지정.
다. 장비 및 군대여물 관리
라. 직인분수
2. 경비증대
가. 중앙청 청사 경비
나. 출입자 통제
제 55조(공항 경비대) ① 공항 경비대에 경비과·안전과와 경비증대를 두고 과장(증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② 경비과에 행정계와 경비계를 두고 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고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
1. 행정계
가. 복무 및 인사
나. 경리·보급
다. 장비관리
라. 직인분수
마. 경비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계
가. 일반경비 지휘 수립

나. 청원경찰관 운용 및 감독
다. 민방공 업무
라. 교통관리
마. 봉선관리
④ 한전과에 1계와 2계를 두고 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고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1계
가. 일반수사 및 정보
나. 공항 경비구역내 민족 사찰의 조사 처리
2. 2계
가. 국내선 저상 경문 및 출입 보안
⑤ 경비증대장은 경감으로 보하고 경비증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항 저녁내 경비
제 56조(소방행정과) ① 소방행정과에 서무과·관리계와 각한계를 두고 계장은 소방경정·소방경각 또는 소방경으로 보한다.
② 소방행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무과
가. 소방현역에 관한 사항
나. 의서 및 회의
다. 술집 및 술기집 관한 사항
라. 보안·청중단속 및 당직
마. 직원의 진강 관리
라. 보금 및 인사
사. 원수 및 직원 후생

1973.7.5.

아. 기본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방호파의 제작 실외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소방벽 외 기준 책정	1. 방호계
차. 소방관찰 구역의 설정	가. 경상 계획 및 화재 진압에 관한 사항
카. 범계 및 축계에 관한 사항	나. 화재 통계 및 원인분석
다. 본부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화재 현장 조사 및 처리
2. 장비계	라. 화재 방어 관제회의에 관한 사 항
가. 소방예산 편성 및 배정	마. 의용소방대의 운영
나. 소방예산의 집행 및 감독	바.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다. 세입·세출 및 협정금의 출납 와,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사.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
라. 차량 및 장비의 유지관리	아. 위험물 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인가
마. 소방관서 시설의 유지	자. 위험물 제조소등 자위소방 조 직의 운영·지도
사. 운전원의 기술지도	차. 위험물 취급수입의 적성검사
3. 관찰계	가. 소방수비의 유지관리
가. 소방행정의 감사	타. 과내 나른세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소방관의 비위조사 및 검보의 수진	2. 예방계
다. 진정 사건의 조사 처리	가.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라. 소방관의 경제 지침	나. 소방시설의 축진에 관한 사항
마. 소방사정의 처리	다.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바. 외문 업무의 감독	라. 건축허가 및 준공의 등외
제 57 조 (방호과) ①방호부에 방호계 에 방지·홍보지도계와 기tier설을 두고, 제장 및 실장은 소방기정·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으로 보한다.	마. 건축 및 소방시설의 민원처리

1. 관리자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구회정리사업의 중단계획 및 조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 현정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산의 통합 및 조정·통제
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차장을 위한 이전 및 보상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설자재의 수급
바. 국내 다른과 및 과외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리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담금 및 청산금의 과정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의 평가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금액·징수
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교부금 및 지출
마.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징수금의 짜납지문 및 해체 축탁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벌칙허가 및 준용경사
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타·징수금 과정
3. 소방
가. 소방 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타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3. 흥보지도책
가. 소방 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나. 불포설 계통 및 지도
나. 공보 간행물의 배부
라. 소방 공보관계의 민원처리
마. 소방훈련 및 지도
바. 방화관리자의 강습 및 교양
사. 소방설비사의 면허
아. 소방기구·판매업소의 허가 및 단속
4. 지령실
가. 소방통신의 유치분리
나. 화재발생 각 지역의 수보 및 출동의 지령
다. 화재작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요원의 지도감독
마. 무선통신의 일호 조립 및 분석
바. 관계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소방통신에 관한 사항
제 59 조(도시행정과) ①도시행정과에 관리자·정리계와 처분체를 두고, 제 장은 지방행정사무으로 보한다.
②도시행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 1973.7.6.

3. 처분지

- 가. 채비지의 매각 및 수납
 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채비
 지의 경의변경 및 사용승인
 제 59 조 (도시계획과) ① 시계획 과에
 종합계획제, 지역계획제, 가로계획제와
 재개발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
 쪽으로 보한다. 다만, 종합계획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힐 수 있다.
 ② 도시계획과의 계별 농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계획제

- 가.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 관계법률의 정비
 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라. 도시계획법 제 4조 운용
 마. 일정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바. 사도개설에 관한 사항
 시. 파니 다른제의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계획제

- 가.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의 설정
 나. 도시계획 시설중 주거, 공원, 운
 동장, 학교, 시장, 물처리장,

유원지, 광광합, 도서관, 학관, 공
 항, 공공용지, 공공청사,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전기공급설비,
 저수지, 방문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충유설비, 방송방화
 설비, 박조설비, 사방설비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시설의 지적동의
 고시와 풍력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3. 가로계획제

- 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광장, 주
 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해도,
 산도, 고속철도, 하천, 운하, 상하
 수도, 공동구, 유통업무설비의 설
 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나. 교통정리 계획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의 협의

4. 재개발제

- 가. 재개발사업의 제작
 나.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측량, 설
 계, 시공 및 감독
 다.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및 청산
 이 관한 사항
 바. 도시계획과 광역된 특수사업의

계획 및 실행	지체학의 수립 및 환자 예정자 의 조정
바. 경비비상 지역내 시설계획 및 조정	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토지분을 및 환자 확정
사. 민간인 재개발사업의 행정지원 과 지도 감독	바. 지정된 구획정리사업의 동체· 동영의 개정요구 및 지번 정리
제 60조 (구획정리 1 과) ①구획정리 1 과에 환자 1계 환자 2계와 정리개문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사. 지정된 지번정리의 환자 처분 및 농기축탁
②구획정리 1 과의 환자 1계는 신당, 청량리, 도봉, 화양, 추가, 망우, 창동, 성산, 역촌지구의 환자업무를 환장 하며, 환자 2계는 신림, 신현추가, 시 흥, 경인, 김포지구의 환자업무를 관 장하고, 정치체는 환자 1계와 환자 2 계가 분장하고 있는 지구의 공사설 계 및 시공감독사무를 관장하고 계 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아. 과내 다른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1. 환자 1계, 환자 2계	2. 정치체
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제 61조 (구획정리 2 과) ①구획정리 2 과에 환자 1계·정지 1계와 정지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 사 설계 및 시공감독
나.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 서 사와 축량	나.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풍각물 및 저장물의 보상· 철거는 위한 대상조사
다.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조장 과 지도 감독	다.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풍각물 및 저장물의 보상· 철거는 위한 대상조사
라.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	라. 지정된 토지구획정리 2 과는 영동·감실·천호 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사무를 관장하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지 1계와 정지 2계는 지구별 로 분담하되, 분담지구는 과장이 지

74-42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정한다.

1. 헌지제

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 종합 계획의 수립

나.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의 조사 및 측량

다.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사업시행 조장과 지도 감독

라.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의 헌지 계획수립 및 헌지 예정지의 조성

마.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 안의 토지분할 및 헌지 확정

바. 지정된 구획정비사업의 통제·통영의 개정요구 및 지원정책

사.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의 헌지처분

2. 정지 1제·성지 2제

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의 공사설계 및 시공·지속

나.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 내의 토지 패리

다. 지정된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 내의 공작물 및 지장물의 보상

철거를 위한 대상조사

제62조(건축과) ①건축과에 건축행정과·건축 1계와 건축 2계를 두고 건축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 1계장과 건축 2계장은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②건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과

가. 건축관계 제증명' 발급

나.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소원·소송의 처리

다. '건축사의 지도 감독'

라. 건축법 및 관계규정의 정비

마. 건축 행정의 연구·발전

바.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 1제

충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영등포구·관악구 지역의

가. 건축허가·준공검사 및 공사 감독

나.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조정
다. 위험 및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나. 주택자금 및 주택건설업자 조사
라. 건축에 따른 청화조·옹벽·석축·공작물의 안전도 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표준주택개발 및 주택건설 제작
3. 건축 2종	라. 주택조합 육성
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도봉구 지역의	마. 시영주택 입주자 생활지도
가. 건축허가·준공검사 및 공사 감독	마.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상
나.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주택기획제
다. 위험 및 위험 건물에 관한 사항	가. 주택분야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라. 건축에 따른 청화조·옹벽·석축·공작물의 안전도 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주택비특별회계 재산의 충당·조정
제 63 호 (주택행정과) ①주택행정과에 주택행정제·주택기획제·판매제와 수납제를 두고, 제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 주택건설 부·강기 계획의 수립
②주택행정과의 차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단위사업 개발과 신가생산
1. 주택행정제	마. 주택위원회 운영
가. 주택국 소관 행정의 종합	나. 주택통계
	3. 통계제
	가. 주택비 특별회계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나. 재산대장의 정비 및 장교운영
	다. 시영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에 따른 지장물의 이전과 보상
	라. 시영주택의 입주자 신설·분양

보 1973.7.5.

판리 및 행정변경	가. 항축 기본도의 보존 및 관리
마. 주택 개량 축진에 대한 임시조치 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인 수·판리 및 처분	나. 항공사진의 판독
4. 수납제	다. 항공사진 자료의 관리
가. 시영주택의 분양금·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조정 및 징수	라. 항축도 제작 및 활용
나. 시영주택 작품 수입금의 이 남에 대한 체납처분 및 사후조 치	마. 지상활용 및 판독
제 64 조(단속과) ① 단속과에 지도제· 항축과 및 단속체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나반· 항축제장은 지방도록기사로 보할 수 있다.	3. 단속제
② 단속과의 세권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민속 및 철거
1. 지도제	나. 기동철거반의 운영
가. 무허가 건물 신발생 방지제 획 및 지도·세우·	제 65 조(개량 1과) ① 개량 1과에 제 회계·개량제 및 단기조성제를 두 고, 제회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량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축기사로, 단지 조성제장은 지방도록기사로 보한다.
나. 항공사진 활용의 계획	② 개량 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다. 항축도의 대목·이용계획 및 보급	1. 재회계
라. 타 부서 협조 및 과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기존 무허가 건물의 철거 현지개량에 관한 제획
2. 항축제	나. 청탁지·조성 계획 및 여전 조성
	다. 철거민 이주 청탁
	라. 과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개량제
	가. 무허가건물 현지개량

나. 불량건물 개량	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초가지붕 개량	2. 개량 1제, 개량 2제
3. 단지조성제	가. 주택개량 속전에 관한 일시 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의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속량· 설계·시공 및 감독
가. 정착지 및 배지조성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독	나. 동면에 의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주택개량 제 회 및 설계·시공과 감독
나. 투데단지 토목공사의 설계·시 공 및 감독	제 66 조 (개량 2제) ①개량 2파에 의해 개량 1제 및 개량 2제를 두 고, 관리책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량 1제장과 개량 2제장은 지방토목 기관도 보한다.
다. 위사업 시행에 관한 토지 분할 및 지적측량	제 67 조 (주택건설과) ①주택건설과 서무제·공사 1제·공사 2제와 경비 설정을 두고 서무책장은 지방행정사 무관으로, 공사 1부장과 공사 2부장 은 지방건축기술로, 설계책장은 지 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주택건설과의 세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사 1 제와 공사 2제의 분장사무는 지구 별로 담당하여 담당자는 과장이 이호 저정한다.
1. 분의제	1. 서무제
가. 주택개량 속전에 관한 일시 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 제 회 스크립과 대상조사	가. 지정주체·전선에 관한 자료 의 충합정리와 관련문서·계획 에 관한 사항
나. 동면에 의한 재개발지구 개 량에 따른 행정지원	나. 소규모사업의 자치구입 및 출입
다. 동면에 의한 예산의 운영	나. 자치의 양상화·효율화에 관한 사항
라. 과거 다른 세의 주관도 주	

7-4-45 제 385호 그 1

시

1973. 7. 5.

라. 과내 다른 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임·료금에 관한 사항
2. 공사 1 세, 공사 2 세	라. 노선업종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및 운송사업체의 지도 감독
가. 시영주택건설의 시공 및 감독	마. 수도행정자문위원회 교통분과 위원회의 운영
나. 시영주택 보수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바.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기타 시영주택에 관한 기술사무	2. 운수운영 제
3. 설비 제	가. 노선업종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제의 수립 및 교통대책
가. 시영주택의 전기·수도·위생·난방·기계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감독	나. 노선업종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인허가
나. 시영주택 시설보수 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다. 노선업종 차량의 증차·면허·점차 및 노후차 대체에 관한 사항
제 68조 (운수 1 과) ① 운수 1 과에 본수행정제·운수운영제의 운수지도 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라. 노선업종의 운송시설(주차장·차고 등) 인가
② 운수 1 과의 재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마. 터미널에 관한 사항
1. 운수행정제	3. 운수지도 제
가.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홍제	가. 노선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체 총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 훈련과 표창
나. 노선업종의 수송계획 수립 및 교통대책	나. 노선업종 차량의 운행지도 감독 및 서비스 개선
다. 노선업종의 교통 조사 및	다. 노선업종 법령 위반 차량의 행정처분

제 385 호고 1

시

라. 정유소의 조정

마. 교통민원신고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

바. 노선업종 자동차의 운행 중
및 보령에 관한 사항

제 69 조 (운수 2 파) ① 운수 2 과에
운수 1 세 · 운수 2 세와 운수 3 세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처으로
보한다.

② 운수 2 세의 제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운수 1 세

가.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의
종합조성 · 운임 · 요금 및 통계
에 관한 사항

나.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조
합 및 사업체의 저도 감독

다. 구역업종의 교통량 (운송량)
조사 및 세기준의 처리

라. 국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수 2 세

가.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 · 허가 · 양도 · 양수 · 증가 및
감자 · 자동차운행증 · 노후차대체
및 운송 시설인가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의 발생 사업면허

보 1973. 7. 5. 74-47
다. 화물창고업에 관한 사항

3. 운수 3 세

가.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훈
련과 표창

나. 구역업종 차량의 운행지도
단속과 비행위반 차량의 행정
처분

다. 차량의 서비스 개선 및 교
통 민원신고의 처리

라. 대서 충사대의 관리

제 70 조 (운수 3 파) ① 운수 3 과에 관
리해 · 예무처 · 안전처와 정비처를
두고, 관리처장 · 예무처장과 안전처
장은 지방행정사무처으로, 정비처장
은 기계기과 또는 지방기계기과로
보한다.

② 운수 3 과의 역할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처

가. 운수사업 특권회피 예상의
지급

나. 운수사업 세입 · 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다. 시립자동차정비장 및 자동차
운수사업소의 저도 감독 및
행정서의 유통

라. 시영운수사업을 고침 · 자산의

74-48 제 395호 그 1 시
관리·취득 및 처분

- 아. 시영너스 운행노선의 체정 및 사업차량의 운영
- 바. 시영운수사업용 차기의 수급과 재획의 조정
- 사. 금고에 관한 사항
- 마. 과내 다른 계의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 무 제

- 가. 운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총판·예산의 편성·예산의 집행·결산 및 기재 상환에 관한 사항
- 나. 시영운수사업용 재산의 구매·용역·운반 및 임대차 계약 및 관리
- 다. 시영운수사업의 원가 계산
- 안 전 제
- 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계획 및 조정
- 나. 경사에 관한 세로 및 기술상의 지도 감독
- 다. 보안기준 및 구조 기준에 관한 사항
- 라. 적사장의 지도 감독
- 마.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소의 지도 감독
- 바. 중고 자동차의 매매업소 지도 감독

보 1973. 7. 5.
사. 배달차량의 관리

- 아.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자. 각자·제타자 및 제 사용에 관한 사항
4. 경 비 제
- 가. 차량 정비사업의 계획 및 조정
 - 나. 차량 정비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 감독
 - 다.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인·허가 및 지도 감독
 - 라. 자동차 정비사의 자격시험
 - 마. 자동차 정비사 양성학원의 기정 및 지도 감독
 - 바.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 사.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기록 부의 관리
 - 아. 정비사업 진흥회의 지도 감독
- 제 71 조 (관광과) ① 관광과에 관광진흥제·관광사업제작·관광자모집을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관광과의 계절·분장사무는 다음 사호와 같다.
- 1. 관광진흥제

가. 광광현정회 종합계획
나. 광광신전 및 관하이념의 보 급 및 계통
다. 광광객의 유치 및 여행안내 리. 광광시 설의 설치
가. 광광에 관한 국제회의
마. 광광단내소 운영
사. 광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광광사업계
가. 광광업소 등록 및 허가
나. 광광시 설의 운영 및 유치관 리
3. 광광지도계
가. 광광지도의 조사·통제 및 개발
나. 광광업체의 지도 감독
다. 광광협회 운영의 지도 감독
라. 광광업체 종사원의 교양지도
제 72조(전설행정과) ①전설행정과 대. 전설행정과 보살피와 중기 관리 체를 두고, 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전설행정과의 제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설행정과
가. 국소관 행정 및 예산의 총 괄조정
나. 전설공사용 차제의 구입조성 부 충남
다. 전설업자의 지도유찰 및 감독 라. 국소관 사업소, 운영의 지도

(한강전설사업소 포함)

마. 국내 다른 곳 및 광내 다른
지역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상계

가. 도시계획 사업에 수반한 사
차제 산의 수동과 보상 및 저
택의 정리
(토지 구획정리 및 택지조성
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3. 중기 관리계

가. 전설공사용 각종증기의 등록
나. 전설공사용 각종증기의 신사
다. 중기 관리 각종 증명의 신호
라. 전설공사용 증기국 구입·영
리·운임 및 출납마. 중기 관리 사업소 경무과 기관
지도나. 중기 관리 기관 및 기관 관
리에 따른 직무제 73조(시설관리과) ①시설관리과에
서 설립리과·중기 관리 계약 유료로
체를 두고, 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②시설관리과의 세목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과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회 행정
부 관리
나. 도로상의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

74-50 제 385 호 그 1

- 나. 도로의 청용로 과정
 나.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
 마.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바. 공공용지 (도로·구거 부지·하천부지) 외 점용 및 사용허가
 사. 바내 다른 세의 주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지관리제

- 가. 공공용지의 교황에 관한 사항
 나. 물류·공용지의 양수에게 관한 사항
 다.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및 관찰 사항
 가. 수익자 부담금 과정에 관한 사항
 마. 공공부지의 절기 등기에 관한 사항
 바. 공유·연의 점용 및 사용허가 (시공·감독은 제외)
 사. 공유·연 매립 면허에 관한 사항 (시공·감독은 제외)

3. 유료도로제

- 가. 유료도로의 운영
 나. 유료도로 수입금의 세금
 다. 유료도로 관리인회 일사 및 보수

- 라. 기타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
 74 조 (토목파) ① 토목파에 토목제 도록체·교량체와 조명시설지를 두고, 토목제장·도로제장과 교량제장은 토목기자 또는 지방토목기자로, 조명시설제장은 전기기자 또는 지방전기기자로 보인다.
 ② 토목파의 계별문장사무는 다음 자로 각각 같다.

1. 토목제

- 가. 토목에 관한 조사체회 및 자료

1973. 7. 5.

1. 종합정리와 관련공사계획의 조정

- 나. 고가도로·고속도로 및 유로도로의 신설에 따른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다. 임세횡단 시설물 (보도·우교·지하도·지하광장)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라. 도로 및 구거 점용허가 또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협조 및 시공·감독

2. 도로체

- 가. 일반도로 (국도·특별시도·준용도로) 와 도로부속물의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나. 도로대장의 관리

3. 교량체

- 자.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위사업으로서의 교량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나. 대규모 교량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접속도로의 설계·시공 및 감독
 나. 교량의 유지관리

4. 조명시설제

- 가. 가로등과 도로부속물의 조명 시설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 제 75 조 (포장파) ① 포장파에 시설제와 보수체를 두고, 제장은 토목기자 또는 지방토목기자로 보인다.

<p>② 포장과의 기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설 계 가. 신설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나. 역청사업소 운영에 대한 생 산계획과 기술지도 다. 전설사업소의 포장에 대한 기술지도 라.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보수 계 가. 기성포장도로의 개수에 따른 조사, 측량,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나. 도로굴착허가 및 등록증 사의 시공감독</p>	<p>비 및 벌금위반자의 조치 나. 하수도에 관한 일원의 처리 나. 하수도 특별회계의 운영 라. 하수도 수입금의 정수 및 세 날세분 마. 하수처리장의 용지 및 지정을 위한 이전과 보상 라.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하수처리 계 가. 하수처리장의 건설계획과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유수지의 설치, 조사·설계·시 공감독 및 유지관리</p> <p>3. 하수관리 계 가. 기설하수도의 유지관리 나. 기설하수도의 보수·개수공사와 조사·설계·시공 및 감독</p> <p>4. 하수시설 계 가. 하수도 및 치수에 관한 종합 계획과 조사 나. 신설하수도의 설치·조사·설계·시공 및 감독</p> <p>5. 대수 계 가. 하천의 개수계획과 개량공사의 조사·설계·시공 및 감독 나. 하천 인수 및 유계관리 다. 하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p>
<p>제 76 조 (하수과) ① 하수 우에 하수 행정계, 하수처리계, 하수관리계, 하수시설계와 치수계를 두고, 하수행정 계장은 서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 처리계장·하수원의 계장·하수시설계 장과 치수계장은 도록기과 또는 지방로록기과로 보한다.</p> <p>② 하수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하수행정계 가. 하수도 및 하천환경 법규정</p>	

용허가(매립면허포함)에 따른
기술의 협조 및 시공 감독
라. 풍수해 조사계획 및 대책수립
제 77 조(영선과) ① 영선과에 공사
계획 및 설비를 두고, 공사체장은
지방건축기자로, 설비체장은 기계기
작 또는 지방기체기자로 보한다.
② 영선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공사계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시유전축물의 공사
- 나. 사구·전축물의 신축·개축 및
수리·감사와 계획설계와 시공감독
- 다. 과내 다른과 및 과내 다
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설비계

- 가. 시유전축물 공사로 부대설비
나. 전기·위생·냉방·난방·급수
기타 기계설비의 시설·개수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 다. 전수률 대지에 관한 토목공
사와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제 78 조(업무과) ①업무과에 서무계
예산계와 과정재를 두고, 계장은
시방행정사무관으로 보인다.

②업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나. 수도국소관 4급이하 공무원
의 인사조정 요청
- 다. 수도사업소 및 수도관리사업
소의 지도감독
- 라. 수도사업소 업무처리의 조사
확인

- 마. 상수도 시공업자의 영업허가
와 지도

- 바. 수도자문위원회의 운영

- 사.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
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2. 예산계

-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종합계획
수립·심사분석 및 사업경영의
개선

- 나. 소관사업의 원가계산

- 다. 상수도 사업비 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과정계

- 가. 급수사용료 기타 세외수입의
조정과 통제

- 나. 급수사용료 정수의 지도

- 다. 수도사업비 세입현계

- 라. 급수사용료 관계 재설정의
처리

<p>제79조(경리과) ①경리과에 조달계 경리과와 관계 계정을 두고, 계장은 지방청장과 부관으로 보한다. ②경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조달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소관 사업용 자재·물품의 구입·임대차·운반과 용역에 관한 계약 나. 상수도 사업공사의 도급계약 다. 국소관 불가조사 라. 국소관 세입세출외금과 유가 증권의 출납보관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p>2. 경리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도 사업비의 회계실사 및 출납의 총괄 나. 국소관 물품점수 및 공사진 사의 입회 다. 상수도 사업자금의 조정 및 배정 라. 국소관 지출 증빙서류의 보관 마. 금고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사업비의 결산 <p>3. 관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도 사업용 물품의 수급 계획 및 출납 	<p>나. 상수도 사업용 고정재산의 관리</p> <p>제80조(기전과) ①기전과에 전기 계·기계계와 안전 관리계를 두고, 전기계장과 안전관리Section장을 지방전 기기과로, 기계Section장을 지방기계기과 로 보한다.</p> <p>②기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도 사업용 전기설비 시 설의 확장계획 나. 상수도 사업용 각종 전기설 비의 설계·시공 및 감독 다. 상수도 사업용 전력의 수급 계획 및 사용량 확장 라. 상수도 사업용 전기설비 계 량의 연구 마. 상수도 사업용 전자 및 광 설비의 유치판리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p>2. 기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도 사업용 기계설비 시 설의 확장계획 나. 상수도 사업용 각종 기계설 비의 설계·시공 및 감독 다. 상수도 사업용 기계설비 계
--	---

당의 연구	나. 송수관 유지관리
라. 상수도 사업용 자동차의 유지 관리	제 82 조 (급수과) ① 급수과에 배수 계·누수방지계와 급수장치계를 두고, 배수계장과 누수방지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급수장치계장은 지방 기계기과로 보한다.
3. 안전관리 제	② 급수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상수도 사업용 기자·전기설비의 점검·유지관리 및 지도 감독	1. 배수 개
나. 각 수원지 기체·기기분야 종사인의 교육	가. 배수 및 급수에 관한 지도와 부정급수 공사의 단속
다. 수도진화 교환대의 유지관리	나. 급수의 종합계획 수립과 비상급수의 대책
제 81 조 (수원과) ① 수원과에 정수계와 설비개량계를 두고, 기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다. 수압조절과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② 수원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배수지 및 배수관 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1. 정수계	마. 배수지 운영의 지도·감독 (천기 및 기계분야는 계외)
가. 수원지 유지관리 및 운영의 지도 (천기 및 기계분야는 계외)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수질관리 및 약물에 관한 사항	2. 누수방지계
다. 공업용 수도에 관한 사항	가. 송·배수관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의 지도감독
라. 상수도 생산량 계획 및 조정	나. 송·배수관 누수의 연구분석과 누수방지 계획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노후 배수관의 개량 및 통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2. 설비개량계	
가. 수원지 설비 개량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라. 노후 금수원의 개량 및 통
합공사의 지도감독

3. 금수장치제
가. 금수시설의 보수에 관한 지도
나. 양수기 및 금수용구의 수급
에 관한 사항

다. 소가압장의 설치승인 및 운
영의 지도(전기 및 기계분야
는 제외)

라. 수탁급수·공사의 지도감독
마. 금수탑·소화전·금설공용전의
설치계획

바. 가압시설 및 개량공사의 설
계 시공감독

사. 기설 상수도관의 이설에 관
한 사항

제 83조(시설과) ①시설과에 시설
제·공무·계와 공무 2제를 두고.
제강은 기방토목기과로 보낸다.

②시설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1. 시설 계
가. 상수도 확장의 기본계획
나. 상수도 신설·확장공사의
설계
- 다. 물동계획
라. 상수도 사업용 자재의 수급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식 아니하는 사항

2. 공무 1제

가. 상수도 및 수원지의 신설·
확장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나. 상수도 및 수원지의 신설·
확장공사의 정산·설계서류의
정비

나. 상수도 사업용 양조물의 신
설·개축 및 노수능사의 신설·
시공 및 감독

3. 공무 2제

가. 상수도 등·비수관 및 배수
지의 신설·확장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상수도 등·비수관 및 배수
지 신설·시설공사의 정산·설
계서류의 정비

다. 국내 14는 과의 부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수탁공사의 설
계·시공 및 감독

①(설정일)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지규칙) 1970.9.1 서울특별시
규칙 제 1083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 1972.5.31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19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소방
본부칙제와 1970.5.20 서울특별시
규칙 제 936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은 이를 제지
한다.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
칙을 이에 상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장 해 식

1973년 7월 4일

(으)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11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이칙중 다음
과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총무과) ①총무과에 관두개·
동정제·기획제·재난안전도제와 안
전체관 누고, 재량은 지방행정부사
로 보한다.

②총무과의 계별 분정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계

가. 보안 및 청중도우

나. 인 사

다. 회식·회의 및 세우

라. 회계 및 용도

마. 행정장비 및 기서의 관리

바. 공 계

사. 시유재산의 관리·배각·임대
와 대금의 수납

아. 행내 다른 실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과 축하자 아

니하는 사항

2. 동 정 계

가. 동의 지도감독과 인사 제청

나. 구·동의 행정구역·명칭·위
치의 변경

다. 통반 조직 및 운영

라. 기부금품 및 임부금품 모집

마. 해화 기타 학무

바.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사. 행정에서 허가 및 소개영업
신고의 지도

이. 국민저축 및 국채

자. 주민등록 및 인감

차. 동장인사

카. 시민표창

타. 동행성 재산의 관리

3. 기 획 계

가. 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종
합조정

나.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다. 중요계획수립에 관한 조정통제

라. 구시책과 기본계획 시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마. 법 부

바. 구자세 감사와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제체정

사. 홍보 및 선전

아. 공연장 및 공연행위의 지도

자. 출판사·인쇄소의 등록 차. 여론조사 및 자매결연 가. 공공단체의 지도감독 4. 새마을 지도체 가. 새마을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나. 새마을사업 추진의 지도와 실사문석 다. 새마을사업 행사 라. 환경운동 지원 마. 도시환경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5. 안전체 가. 전시운영계획 나. 비상체계 세부 실행 계획수립 및 실사문석 다. 예비군 구성증대 운영 라. 각종 재해대책 종합체의 수립 및 지도 마. 재해대책 본부 운영 바. 민항공 및 항제훈련의 실시 제 3조 제 2항 제 1호 중 「가. 민원안내」를 「가. 문서 및 관인」으로 하고 「나. 민원용지 배부 및 대필에 관한 사항」을 「나. 민원안내 및 민원대설」로 하며, 동조 동항 제 3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호치민고 사항의 주민등록과 풍보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산업과) ① 광로구·금구·파포구·용산구의 산업과에 산업계와 농지계를 두고, 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영등포구·도봉구·관악구의 산업과에 상공체와 농경체를 둔다. ② 산업체장·상공부장과 농경체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농지계장은 지방농민기사로 보한다. ③ 산업과의 세밀 관찰부는 다음과 같다. 다른 광로구·금구·파포구·용산구의 산업체는 상공체와 농경체의 경우를 끝장한다. 1. 상공체 가. 시장과 지도육성 나. 계량기의 관리 다. 현기증작을 사실의 지도감독 라. 광화유의 배급 마. 무규소·돌체의 지도 바. 소비자보호 및 홀가조절 사. 광장등록과 광장설계 조사 아. 업에 관한 사항 자. 연탄공장 지도 육성 차. 중소기업·특화 및 창업선별의 육성
---	--

74-58 제384호 그 1 시

보 1973. 7. 5

<p>가. 수출입사무</p> <p>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농 정 계</p> <p>가. 농업증산 및 창鹹계획</p> <p>나. 담작 및 전작지도</p> <p>다. 특수작물 생산의 제도</p> <p>타. 비료 및 농약</p> <p>마. 양정·수산과 축산</p> <p>나. 농지분배 업무처리</p> <p>3. 녹 지 계</p> <p>가. 산림보호와 조림의 장려</p> <p>나. 임야관리와 임야물의 수급</p> <p>다. 임야 관제지도 육수</p> <p>라. 사방과 양묘</p> <p>마. 꽃재·실탄·토탄 기타 임산물의 생 산 유통과 소비개선</p> <p>바. 공원·녹지대의 조성과 유지 관리</p> <p>사. 가로수 기타 수목의 식재·구충과 보식</p>	<p>② 녹지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을 각호와 같다.</p> <p>1. 녹 지 계</p> <p>가. 공원·녹지대의 조성과 유지 관리</p> <p>나. 임야의 관리</p> <p>다. 임업단체의 지도육성</p> <p>라. 가로수 기타 수목의 식재와 보식</p> <p>마. 전개지 단장</p> <p>바. 기념물의 관리</p> <p>사. 사방조림 및 양묘사업의 지도,</p> <p>아.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보 호 계</p> <p>가. 임지훼손 및 산림법법자 단속</p> <p>나. 벌채허가 및 부정 임산물 단속</p> <p>다. 산림 병충해 방지</p> <p>라.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p>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녹지파) ① 녹지파이 녹지계와 보호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p>	

마. 수협회, 자도	청구에 관한 사항
바. 그린벨트 관리	사. 과소관 시세의 남세 중명동
사. 임야대, 토석 허위의 허가	시세에 관한 충녕서 일급
제 6조를 삭제한다.	아. 가스관 체납시세에 관한 알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재산의 공여 및 환거처분
제 7조(세율제 1과) ①세부제 1과에	자. 과소관 체납시세의 불납결손
정수제, 직세제 1제, 직세제 2제 및	처분
지체계를 두고 징수지장, 직세제 1	차. 과소관 낭기우 현금 정수원
지장과 직세제 2제 장은 지방청주	부의 수금
사로, 지체제장은 지세기자 또는	가. 과소관 세속의 징수. 죽남처
지방지적기사로 보한다.	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유예
②세부제 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과소관 세속의 죽남시세에
다음 각호와 같다.	관단 도세 범칙 사전의 조사
다만, 직세제 1제와 직세제 2제는	처리
구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구역은	파. 정세 장비의 관리
구청장이 결정한다.	하. 과세 다른 계의 수금에 속
1. 징수 제	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과소관 시세의 징수실적과	2. 각세제 1제, 직세제 2제
세입금과 징수보고	가. 현년도 및 과년도의 죄득에
나. 과소관 시세의 가산금 및 누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와 우
축전의	직세의 세원조사, 부과, 징수,
다. 과소관 세입금의 출납	세교작성과 징세사무, 나인,
라. 과소관 시세(징수부의 소인,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에 관한
판매와 접제	사항은 직세제 1과에서 전담
마. 과소관 시세의 과오납금 결	한다.
회와 환불 및 충당	나. 과소관 죽남시세에 대한 죽
바. 과소관 시세의 공과금 교부	남처분, 징수축약 및 불납결손
	처리

4-60 제 384 호 그 1 시
 다.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서 신
 정사항 처리
 바. 소관세·목에 관한 파워소·
 벤경 및 감면
 마. 토지등급 절정 및 동산등의
 시가 조사
 바. 지소관 시세에 관한 조세법칙
 사건의 처리
 사. 가옥대장 정비에 관한 자료
 융보
 3. 지적계
 가. 토지 및 임야대장의 정비보존
 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비보존
 다. 토지에 관한 재신고 및 칙령
 처리
 라. 지적관계 체증명 할급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세무제 2 과) ① 세무제 2 과에
 정수제. 세무제 1 계와 세무제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
 안다.
 ② 세무제 2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세무제 1
 계와 세무제 2 계의 분장사무는 구
 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 구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강수계
 가. 과소관 시세의 수결정 및

보 1973.7.5
 구의 세입금·징수보고
 나. 과소관 시세의 가산금 조정
 및 특별설의
 다. 과소관 세입금의 한납 및
 세외수입금의 징수 (토목과 및
 청소과의 세외수입금 제외)
 라. 과소관 시세징수부의 소인판
 리·집계 및 과정보고
 마. 과소관 시세의 과오납금 신의
 와 환불 및 충당
 바. 과소관 시세에 관한 공과금
 고부청구 및 징수촉탁의 충당
 사. 과소관 시세의 납세 증명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
 아.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세무제 1 계·세무제 2 계
 가. 유통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및 주민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
 나. 소관 현년도 세납시세에 대
 한 체납처분·징수촉탁 및 불
 납결손 처리
 다. 소관 세무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의 처리
 라. 소관 세무에 관한 부과의
 취소·변경 및 감면
 마. 소관 세무에 관한 접재 및

세포의 작성보고	감독
바. 소관 세부에 관한 조세법칙 사전의 조사차리	나. 가로등의 관리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념물 유지관리
제 11조(토목과) ①토목과에 관리체 로복제와 가로정비체를 두고, 관리 체장과 가로정비체장은 지방행정주 사로, 토목처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라. 수상·치수의 계획 및 시행
②토목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마. 토목업자의 지도 조장
1. 관리체	바. 하수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물류 세의)
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공공 용지의 사용허가와 지도감독	사. 육교, 가드레일·임체교차로의 유지 관리
나. 도로, 하천부지, 철옹로의 부 과·정수	2. 가로정비체
다. 도선대 관한 사항	가. 물류의 정비와 하수도의 유지 관리
라. 도시계획에 의한 제 계획선 선축선의 명시	나. 보도부락의 조성과 유지관리
마. 토지의 사용과 수용	다. 도로상의 강액을 정리
바. 지하도 및 지하상도의 운영 및 관리	라. 보안등 유지관리
사. 공영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 료의 부과 정수	마. 도로수이자 부담금·도로 입 시 성용허가·도로복구비의 부 과정수
아. 과내 다른 계의 주관이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제 12조중 "봉산구"를 삭제한다.
2. 토목계	제 13조를 삭제한다.
가.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2 제 384 호고 1 시
서울특별시 구술장소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관례식

197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12 호

서울특별시 구술장소사무·분장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구술장소(이하 "한강로"라 한함)의 관리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서무과) ① 천호·은진·양서구 술장소의 서무과에는 총무과·동정제 및 새마을지도계를 영농술장소의 서무과에는 구주제·동정제·새마을지도계·국민체육회와 함께 사업과로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세별 분장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무제

- 가. 소안 및 청동단속
- 나. 인사·복무·급여 및 후생
- 다. 의식·회의 및 공·기·화·기획·예산·회계 및 용도
- 마. 시유재산의 관리
- 바. 후생·구호·노동·사회 및

부녀아동

보	1973.7.5
사. 비상계획 및 안전	
아. 출장소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정제	
가. 동행정의 지도감독과 종·반 조직의 운영	
나.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다. 국민저축	
라. 주민등록 및 인감의 치도	
마. 기부금품 및 임부금품 모집	
의 통제	
바. 대학·기타 학무	
사. 행정대서히가 및 소개영업신고의 지도	
3. 새마을지도계	
가.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봉제	
나. 새마을사업의 추진 시도와 사업 분석	
다. 환경 순찰	
라. 새마을사업 행사	
마. 관경정비사업·종합계획	
4. 민원처리계	
가. 문서 및 관인	
나.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	
다.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5. 호적방사계	라. 인구동태 마. 주거교의 관리 및 작성 바. 주거교의 호적 및 영적 대조 확인 사. 주민등록자와의 호적통보
가. 호적신고 및 천체 나. 호적등·초본 발급 기타 호 적관계 체증명	3. 병 사 계
다. 인구동태 라. 주거교의 관리와 주민등록자 통보	가. 정집 및 소집 나. 정병검사 다. 병사관계 서증서 발급 라. 재향군인의 관리 시장 마. 병사업무의 차관 관찰 대조 바. 낭적자원의 관리
마. 정집·소집 및 정병검사 바. 병사관계 체증명 알급 사. 병지자원의 관리 아. 기타 호적·병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병사에 관한 사항
제 3 조 (시민과) ①시민과에 민원처 리제·호적제와 병사제를 두고 제 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시민과의 개별 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4 조 (산업과) ①산업과에 산업부 독자제와 보호제(영농·임상소는 제외) 한다)를 두고, 관리기능은 지방행정 주사로, 주지자장과 보호제장은 지방 농협기사로 보한다. ②산업과의 개별 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농·임상소는 주지 자체에서 보 호제 업무를 분장된다.
1. 민원처리제 가. 물어 및 관인 나. 민원 알내 및 민원상담 다.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라. 과대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1. 산업부 가. 상정 및 재량기의 지도와 지도 나. 공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다. 농경·약생·수산 및 축산
2. 호적제 가. 호적신고 및 천체 나. 호적 등·초본 발급 다. 신천 기타 호적관계 체증명 발급	라. 수출업

1973. 7. 4. 제 384 호 그 1

마. 소비자보호 및 물가조절
 바. 공장동축 및 질적조사
 사. 현금공장 저도 육성
 다. 전기공학을 시설의 허가
 사. 과내 다른계의 주민과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2. 품지 계
 주. 원천·속지 대체, 조성과 유지
 관리
 나. 심야관리
 다. 임업법체의 지도·육성
 라. 가로수·기타 수목의 식재와
 보식
 마. 청개지 관리
 바. 기생한의 관리
 사. 사방도립 및 양도사업의 지도
 3. 보호 계
 가. 임지훼손 및 산림법자 단속
 나. 별재허가 및 무지침 산불 단속
 다. 산림 병충해 방지
 라. 임산불 수급 및 제제소의 허
 가
 마. 수령의 지도
 바. 그린벨트 관리
 사. 암아내 토식 예방 허가
 제 5조 〈세무사〉 ①세무사에 정수제,
 세부 1개, 세부 2개와 기획재정부 두고
 정수제장, 세무 1개장, 세무 2개장은

1973. 7. 4. 제 384 호 그 2

지방행정주수로, 지체제장은 지체기
 사 또는 지방자체기사로 보한다.
 ②세무과의 세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세무 1개과 세무 2개과 분장
 사무는 당해 출장소의 관할 구역
 을 지역별로 분담하고 그 담당지
 역은 출장소장이 결정한다.
 1. 정수제
 가. 시세의 정수결정과 세입정수
 보고
 나. 시세의 가산금조정 및 특례
 결의
 다. 시세 및 세외 수입금의 출
 납
 라. 시세정수부의 소인·관리·집
 계 및 과정보고
 마. 시세의 과오납금결의와 환불및충당
 바. 시세에 관한·공과금교부처구에
 대한 허의 및 정수축탁의 총괄
 사. 시세관계 증명서 발급
 아. 과년도 세 납시세에 대한
 납처분과 불납결 손처분
 자. 시세에 관한 압류개설의 공
 애 및 환가
 차. 낙세납료에 관한 사항
 카. 현금정수원부의 수불과 재무
 비의 실행 및 장비 관리

타. 파비 다른계의 주변에 속하지 · 아니하는 가한	다. 제소관의 시세부과에 관한 제설고 신청의 처리
2. 세무 1재	라. 제소관의 시세부과장수에 관한 취소·변경·감면과 징수율 예
가.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농지 세·주민세 및 목적세의 세원조 사와 부과 및 현년도분의 정수 나. 제소관의 현년도 시세체납에 대한 압류	마. 가옥대장의 정비와 보존
다. 제소관의 시세에 관한 제설 고와 신청의 처리	바. 제소관 시세에 교작성 및 부 속에 천지
라. 제소관 시세의 부과장수에 관한 취소·변경·감면과 징수 율 예	사. 토지의 등급설정 및 변경
마. 가옥대장의 정비와 보존	아. 제소관 시세의 관할·조사법 칙 사건의 조사처리
바. 시세 세표 작성 및 부과액 · 징계	4. 지적재
사. 토지의 등급설정 및 변경	가. 토지 및 임야대장의 정비 보존
아. 국세부과세 등 폐지 세목의 부과 정수	나. 지적도 및 일자도의 정비 보존
자. 제소관의 시세에 관한 조세 법칙 사건의 조사처리	다. 토지 및 임야도서 분할 및 합병
3. 세무 2재	라. 지적구역 대승역 설정
가. 취득세·재산세·농지세·목적 세·주민세·유동음식세·도축세 마련세 및 면허세의 부과와 현년도분의 정수	제 6조 (설현과) ①설현과에 도록 건축세·주택세와 청소세를 두고 도록세장은 지방도록기사로 건축세 장은 지방건축기사로 주택세장과 청소세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설현과의 개별 분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제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체 납에 대한 압류	1. 토목재
	가. 도로·하천·구개 기타 풍물

74-66 제 384 호 그 1 시

보 1973.7.5

<p>총괄의 관리</p> <p>나. 도로, 하천부지와 도로수익자 부담금, 도로임시점용허가, 도로 복구비와 부과징수</p> <p>다. 도선에 관한 사항</p> <p>라.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선 및 건축선의 지정</p> <p>마. 토지의 사용과 수용</p> <p>바.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p> <p>사.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p> <p>아. 빛·음·진동경비와 하수도의 유치 관리</p> <p>자.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p> <p>차.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 지·관리</p> <p>카. 공영주차장관리 및 주차료의 부과징수</p> <p>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건축계</p> <p>가. 건축허가와 차공 및 준공검 사</p> <p>나.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 감독</p> <p>다. 위법건축 및 위험건물에 관 한 사항</p>	<p>라. 죽대와 안전도 검사 및 위 험축대</p> <p>마. 영선</p> <p>바. 시영주택 보수공사</p> <p>3. 주택계</p> <p>가. 주택계획 및 통계</p> <p>나. 불량건물 개량</p> <p>다. 시영주택관리 및 수납</p> <p>라. 무허가건물 발생방지 및 철 거</p> <p>마. 철거민 임주분양</p> <p>4. 정소계</p> <p>가. 진개·분뇨의 수거계획</p> <p>나. 오물수거수수료 조정 및 징수</p> <p>다. 진개 및 분뇨매각대 정수</p> <p>라. 청소차량 및 강비관리</p> <p>마. 오물수거 운반처리</p> <p>바. 오물 불법처분 감시</p> <p>사. 청소일부 임용</p> <p>제 7조 (직무대행) 행장소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p>
---	--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작호와 같다.
	1. 서 투 제
서울특별시장 양 대식 1973년 7월 4일	가. 보안·청중 단속 나. 문서·편인 다. 인사·복무·급여·후생 및 교육 라. 기부용 차량·장비용 품·도색 등의 관리와 주관 마. 회전·사상 및 복제 비. 자하설의 시설·진학·숙용·활 연·사랑의 처리 사. 지하철 무김승차증의 발급 아. 지하설 조선의 교육훈련 자. 지하설 안전수칙·자기인정 차·노사관의 사고·온로·안전 각·온부나 대론과 일·과세·다과 ·세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장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 칙 제
제 4조의 (담당관) ①운영 담당관은 지 하철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중요제 회의 수립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기술 담당관은 지하철의 건설과 운 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종합조정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운영 담 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가.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장·중·단기 계획의 종합조정 나. 기본운영체계의 수립과 실사 ·분석 다. 지하철 경영성적의 조사 라. 지하철 사업 예산의 종합조정 마. 자금의 수급과 조달(각본·처 입금 및 세금 포함) 비. 지하철 세입 예산의 정수
제 5조 '내지'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제 5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제· 기획제·경비제·조달제 및 관제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1973.7.5.

3. 경리계	호와 같다.
가. 사업예산, 자금의 계획 및 결산	1. 운영계
나. 회계문서의 파독조사 및 회계심사	가. 여객운송 및 부대사업의 운영
다. 물품검수 및 공사현장에 따른 입회	나. 수송계획 및 영업수지예산과 영업성적의 분석
라. 금고와 관리	다. 운임·요금 및 여객워급세도의 설정
4. 조달계	라. 운수영업용 설비와 물품의 수급 및 조정
가. 공사비 도급계약	마. 타운수 기관과의 협약수송
나. 물품·자재의 구입·운반과 기타 운역의 계약	바. 여객·물류 사고의 방지와 영업사고에 따른 보상 및 배상
다. 물가 및 신용조사	사. 승차권 및 운수장표류의 재정
라.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아. 여객운수 영업에 관한통계
5. 과제계	자. 영업설계
가. 사업용자재의 출입·보관 및 수급체계	차. 운수영업 인허가 신청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카.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라는 사랑
작문)	2. 운전계
다. 차선대장 정비 및 창고운영	가. 열차운전계획 및 운전시간의 설정
라. 차선의 수용 및 보상	나. 타운수 기관과의 계통운전계획 및 업무조정
마. 용품규격의 제작	다. 열차의 운전 성적조사 및 운전통계
제6 조 (운수과) (1) 운수과에 운영계와 운전계를 두고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전계장은 지방기지기자로 보한다.	라. 운전보안 설비와 용품의 수급 및 조정
(2) 운수과의 계별 분과사무는 다음과	마. 승무원의 운영 및 기능향상

비. 운전 사고의 방지와 운전 사고에 따른 보상 및 배상 사. 운전 지령실의 운영 아. 일차운전의 안전관리 제7조 (공무과) ① 공무과에 보선계와 전속계를 두고, 보선계장은 지방토목기관로, 전속계장은 지방전속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물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와 같다. 다만, 공산1계와 공산2계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지역별로 지정한다. 1. 계 회 계 가. 지하철 건설의 기본조사 및 계획 나.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시행 계획 다.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예산 확정 라. 소관업무에 관한 기준 및 기준에 계정 마. 지하철 건설계획에 따른 청탁 처리 미. 국내 나쁜 사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보 선 계 가. 지하철의 토목구조물 및 체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체도의 전설·개량의 설계·시공 및 감독 다. 체도·수고의 방지 및 관계 철도 요원의 기능 향상 라. 차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전 속 계 가. 지하철의 청차·강내부 및 부대 건축물의 전설·개량의 설계·시공 및 감독 나. 위생·급수·소방설비의 설계·시공 및 감독
제8조 (전설과) ① 전설과에 계획계·설계계·공무체·공사1계와 공사2계를 두고 계획은 지방토목기관로 보한다. ② 전설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2. 전 설 계 가. 지하철건설 토목 구조물의 설계 나. 지하철 전설 토목 구조물의 설계·기준·공법 및 품질의 제정과 조작 다. 토목공사의 발주 3. 풍 무 계 가.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세부 시행계획

나. 공사진도 및 공사품질 관리의 종합조성	가. 전차 수급계획 및 설계·제작
다. 소관자재의 수급계획 및 준비요구	나. 전차 및 검수차 용품의 규격·제정
라. 공사 유관기관과의 협조	다. 전차의 검사·수선 시설의 신설 유지관리
마. 지하철 건설에 따른 생활·진영의 처리	라. 전차의 검사·수선용 기계류와 설치·유지 관리
바. 도록공사에 따른 보수 및 배상	마. 국내 다른곳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사 1제·공사 2제	2. 경수제
가.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독과 설계변경	가. 전차의 안전 및 검수기준 개정
나.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부대공사 및 수탁공사의 시행	나. 전차의 정사 및 수선계획
다. 소관용 차운 자재의 허락관리	다. 전차 검수작업의 능률향상 및 작업성적 통계분석
제 9 조 (전차과) ①전차과에 전차계와 검수체를 두고 계장은 지방기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전차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차량사고 방지대책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조 (전기과) ①전기과에 전투제 전력계·인호계와 통신계를 두고 계 장은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전기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 차 계	

1. 전투체	가. 전기전체 기술의 종합조정 나. 변전지설의 제작, 설계, 시공 감독과 유지관리 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현장관리 라. 소관 전기시설의 사고방지 및 현업원의 기능향상 마. 전기전체 해외용역 바. 전기전체 청원, 진정의 처리 와 보상 및 배상 사.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가. 신호설비의 제작, 설계, 시공 감독과 유지관리 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현장관리 다. 소관시설의 사고방지 및 현 업원의 기능향상
2. 전력체	가. 전력수급 시설, 조명시설, 환 기 및 방난방 설비의 제작, 설계,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나. 전선로의 제작, 설계,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현장관리 라. 소관시설의 사고방지 및 현 업원의 기능향상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텁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을 이에 통보한다. 서울특별시장 날인 1973년 7월 4일
3. 신호체		④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1호 서울특별시 텁보건소직제중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텁보건소직제제중 다음과 같이

74-72 제 384 호

시 보

1973.7.6.

개정한다. 제 3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의 업무를 분정5-지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위치는 시장이 이를 고시한다. 제 11 조중 "사무과장"을 "민원봉사 실장"으로 한다.
---	---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정 칭	관 할 구 역
성동구 보건소	성동구 관할구역중 천호·영등포장소
천 호 지 소	관할구역 일원
영등포구 보건소	영등포구의 가리봉동·서홍1동·서홍2동과
관 약 지 소	관악구의 봉천1동·봉천2동·봉천3동·봉천4동·신림1동·신림2동·신림3동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84 호고 1

시 보

1973.7.5 74-73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직제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15 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의 명칭	관할 구역
종로구 수도사업소	종로구 일원
중구	중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동구
성북구	성북구 · 노봉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마포구
용산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 관악구
수도관리	시내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74 제 384 호 그 1 표 1973.7.6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중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2항 나호중 「용산구」 다음에 「관악구」를 삽입하며 동조 등항 나호중 「성북구」 다음에 「도봉구」를 삽입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4일 ⑤ 서울특별시규칙제 1316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 직제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한 다음과 사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